

연구보고 R40 / 2020. 12

발 간 등 록 번 호
-------------

11-1543000-003362-01
----------------------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 연구 담당

김정호 원장 연구 총괄, 보고서 집필  
이경해 연구원 자료 정리

## 머 리 말

---

이 연구보고서는 환경농업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연구』(연구기간: 2020.11.2~2020.12.16)의 최종보고서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식품 분야의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당면한 농정 과제와 아울러 미래 지향적인 농정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연구과제를 몇 차례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통계청이 농업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에는 5년 마다 농가의 농업경영과 농축산물생산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 2008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농가 통계는 정책적·학술적으로 유용한 통계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총량과 그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서둘러 통계정보 생산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통계에 대하여 그 관계를 검토하고 조사·등록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정보활용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또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면서 교차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농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 그리고 유관기관·학계의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정책의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0. 12.

(사)환경농업연구원 이사장 강 정 일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 3. 보고서 구성 ..... 5

###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 비교

- 1.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에 대한 학술적 및 법률적 정의 검토 ..... 7
- 2.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통계적 농가의 개념 비교 ..... 18
- 3.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의 시대적 변화와 시사점 ..... 26

###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통계의 관계 분석

- 1. 농업경영체 등록의 내용 및 농업인 주요지표 동향 ..... 29
- 2. 농업총조사의 내용 및 농가 주요지표 동향 ..... 39
- 3.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용어 비교 ..... 47
- 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가 통계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 60
- 5.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상호 연관성 및 시사점 ..... 66

### 제4장 농업경영체 통계정보의 외국 사례

- 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 69
- 2. 일본의 농가 통계 ..... 82
-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89

##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각계 의견

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선행연구 주요내용 ..... 91
2.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97
3. 각계 의견의 시사점 ..... 110

## 제6장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및 상호협력 방안

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사항 ..... 113
2.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연계 발전 방안 ..... 121

## 부록

1. 농어업경영체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경영체 등록 관련규정) · 127
2. 농림어업총조사규칙 ..... 148
3. 전문가 의견조사표 ..... 155

참고문헌 ..... 162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농지법안의 농가 정의 변천 .....	13
<표 2-2> 법률상의 농가 및 농업인 정의 변천 .....	17
<표 2-3>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	20
<표 2-4> 농업총조사의 농가 정의와 조사대상 변천 .....	25

### 제3장

<표 3-1>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15~2019년) .....	32
<표 3-2> 농업인경영체 경영주와 종사자의 성별 분포 변화(2015~2019년) .....	33
<표 3-3> 경영주 외 농업인의 가족관계 및 구성 변화(2016~2019년) .....	34
<표 3-4> 타산업에서 전환한 농업경영주의 비율 변화(2015~2019년) .....	35
<표 3-5>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구성 변화(2015~2019년) .....	35
<표 3-6> 여성농업인 및 여성경영주 현황(2015~2019년) .....	36
<표 3-7> 농업인경영체의 경작면적 및 재배면적 현황(2019년) .....	36
<표 3-8> 농업인경영체의 시설재배 현황(2019년) .....	37
<표 3-9> 농업인 경영주의 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2019년) .....	38
<표 3-10> 농업인 경영주의 가축 사육 현황(2019년) .....	38
<표 3-11> 농가 통계의 주요지표 추이(1960~2015년) .....	41
<표 3-12> 농가의 인력 구성 변화(1990~2015년) .....	42
<표 3-13> 농가 농업종사자의 연령별·성별 분포(2015년) .....	42
<표 3-14> 농가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가구원 수별 농가 분포(2015년) .....	43
<표 3-15> 농가의 농업종사자 연령별/종사기간별 분포(2019년) .....	43
<표 3-16> 농가의 경지규모별 구성 변화(1990~2015년) .....	44
<표 3-17> 농가의 영농형태별 구성 변화(1990~2015년) .....	45

<표 3-18>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별 구성 변화(1990~2015년) .....	45
<표 3-19> 농가의 영농형태별 판매금액 분포(2015년) .....	46
<표 3-20> 농가의 영농형태별/농업종사가구원 수별 분포(2019년) .....	46
<표 3-2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주요내용 비교 .....	48
<표 3-22>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용어 정의 및 설명 .....	54
<표 3-23> 2015년 농업총조사의 농가통계 용어 정의 및 설명 .....	55
<표 3-24> 2020년 농업총조사의 용어 정의 및 조사요령 .....	57
<표 3-25> 농업경영체와 농가 통계의 격차(2015~2019년) .....	60
<표 3-26>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구성(2015~2019년) .....	62
<표 3-27> 농가 통계의 농업경영주 구성(2015~2019년) .....	63
<표 3-28> 농업인과 경영주의 농업인의 구성(2015~2019년) .....	64
<표 3-29>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의 구성(2015~2019년) .....	65

#### 제4장

<표 4-1> 독일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구성 .....	81
<표 4-2>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농업경영체 형태 비교(2016년) .....	81
<표 4-3> 일본 농업센서스의 농가 분류와 기준 .....	83
<표 4-4> 농업경영체 조직형태별 추이(2015~2019년) .....	85
<표 4-5> 일본의 농업종사자 추이(2010~2018년) .....	85
<표 4-6> 일본의 인정농업자 내역별 추이(2014~2018년) .....	86
<표 4-7> 일본의 인정농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	88
<표 4-8> 주요국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제도의 검토사항 ·	90

#### 제5장

<표 5-1> 응답자의 직종 분포 .....	98
<표 5-2> 응답자의 연령 분포 .....	98
<표 5-3> 응답자의 연구경력 분포 .....	98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인지 수준 .....	99

<표 5-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 .....	99
<표 5-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	99
<표 5-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연구 목적에 도움 수준 .....	100
<표 5-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심 항목 .....	100
<표 5-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00
<표 5-1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	101
<표 5-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개선 희망 사항 .....	101
<표 5-12> 농업총조사에 대한 인지 수준 .....	102
<표 5-13>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 .....	103
<표 5-14>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	103
<표 5-15>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연구 목적에 도움 수준 .....	103
<표 5-16>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관심 사항 .....	104
<표 5-17>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04
<표 5-18>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	104
<표 5-19>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개선 희망 사항 .....	105
<표 5-20>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체계에 대한 의견 .....	106
<표 5-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공통지표 개발 분야 .....	106
<표 5-22> 농업인과 농가의 기준인 경지 1000㎡에 대한 의견 .....	107
<표 5-23> 농업인과 농가의 기준인 농산물판매액 120만원에 대한 의견 .....	107
<표 5-24> 경영주와 후계자가 별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07
<표 5-25>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 .....	108
<표 5-26>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 내용에 대한 의견 .....	108
<표 5-27> 농업총조사에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 내용에 대한 의견 .....	108
<표 5-28>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연계 협력에 대한 의견 .....	109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1>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 10

<그림 2-2> 농가와 농업인의 법률적 용어 변천 ..... 27

### 제3장

<그림 3-1> 농업경영체의 인적 구성 ..... 66

### 제4장

<그림 4-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 78

<그림 4-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 80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통계청이 농업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에는 5년마다 농가의 농업경영과 농축산물생산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 2008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농가의 개념과 정의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서 비롯되어 1960년 농업국세조사 때부터 통계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현행 농업총조사의 조사대상 농가는 행정리에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일정 기준(경작규모, 농산물판매액, 가축평가액)에 해당해야 함.
- 농업경영체의 개념으로 1994년 농지법에서 ‘농업인’ 정의가 도입되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를 정의함. 2009년 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경영체는 정부정책사업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하여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은 일정 기준(경작규모, 농산물판매액, 농업종사일수)을 충족해야 함.

-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농업인경영체)와 통계청의 농가(농업경영 가구)는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치를 보면 2019년 기준 농업경영체 수는 1,686천개, 농가 수는 1,007천호로서 약 68만 정도의 격차를 나타냄.
  -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세(2015년 1,589 → ‘19년 1,686천개, 증가 97천개), 농가 호수는 감소세(2015년 1,089 → ‘19년 1,007천호, 감소 82천호)를 나타냄.
  -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수가 농가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 기존 경영주와 경영을 분리하는 여성·청년·창업농업인 및 도시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출입경작)를 포함하며, 아울러 귀농·은퇴농의 증가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함.
  
-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업총조사의 농가 통계는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유용한 통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총량과 그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서둘러 통계정보 생산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가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농업총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농가경영·경제 상황을 국가통계포털(KOSIS)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식품부에서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면서 이를 기초로 농업분야 공공DB와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중임.
  -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는 각각 통계정보 생산의 목적이 다르지만,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유용한 통계지표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되는 것임.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수집 정보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통계정보를 생산하면서도 상호 정보를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서 수집하는 조사정보의 개념 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조사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고, 이러한 차이 발생의

연혁적 및 논리적인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두 기관의 조사에서 유사한 지표들에 대한 기관 간 정보의 격차를 최소화 하면서 조사 목적의 달성 방안과 조사자료의 상호 활용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계청 농업총조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각의 조사·등록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통계 정보 활용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통계정보를 생산하면서 교차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가능성 등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마침 통계청에서는 금년 2020년 12월에 농림어업총조사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집계 분석을 실시하게 되므로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2. 연구 내용과 방법

### 2.1. 연구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 검토
  - 농업경영체의 농업인과 사회통념상 농업인의 학술적, 법률적 의미 정의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통계적인 농가 개념의 비교
  - 농가 정의에 대한 시대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정보 간 관계 분석
  -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사항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유사용어 중심 분석

- 기관 간에 용어와 그 조사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논리적 사유 등에 대한 연혁적 분석
- 농업경영체 등록과 유사통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조사
-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계 전문가 의견 수렴(농관원, 통계청, 연구기관 등)
  - 경영체 등록과 통계조사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 방안 논의
  - 상이한 지표에 대한 일치 방안,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방안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농업총조사의 개선 방안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연계 발전 방안

## 2.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 농업경영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선행연구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농가 통계)의 주요내용 비교
  - 농업경영체 관련 용어 : 농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
  -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농가 분류지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분류지표
- 농업경영구조에 관한 주요지표 분석
  - 농업총조사의 농가통계 주요지표 분석(2015~2019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주요지표 분석(2015~2019년)

- 농업경영체 통계조사에 관한 외국사례 검토
  - 조사 대상 : 독일, 일본
  - 주요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구조 통계지표 등
- 농업경영체 정보통계 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유관기관 의견조사 및 정책협의회 개최
  -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가통계에 관한 의견조사 : 대학교수, 연구자 등
  - 유관기관 의견조사 : 정부산하단체, 연구기관 등 의견 수렴
  - 정책협의회 : 농식품부(정보통계), 통계청(농업통계), 농관원 등 의견 수렴

### 3. 보고서 구성

-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며, 제2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 통계의 관계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체 통계정보의 외국 사례를 정리하고, 제5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각계 의견을 조사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및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을 검토함. 세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에 대한 학술적 및 법률적 정의 검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통계적 농가의 개념 비교,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의 시대적 변화와 시사점 등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 통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세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한 농업인 통계의

동향,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가 통계의 동향,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용어 비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 통계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상호 연관성 및 시사점 등의 순으로 검토함.

-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체 통계정보의 외국 사례를 검토함. 세부 내용으로,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일본의 농가 통계, 외국 사례의 시사점 등의 순으로 정리함.
- 제5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각계 의견을 검토함. 세부 내용으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각계 의견의 시사점 등의 순으로 검토함.
- 제6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및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함. 세부 내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농업총조사의 개선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연계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함.
- 부록으로, 이 연구에서 인용한 농어업경영체법, 농림어업총조사규칙,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표를 게재함.

## 제 2 장

---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 비교

#### 1. 농업경영체와 농업인에 대한 학술적 및 법률적 정의 검토

##### 1.1.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 우리나라 농업에서 경영 단위로 널리 인지되고 있는 것이 ‘농가(農家)’이며, 농가를 생산 주체로 하는 농업경영 형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농업의 특질이기도 함.
- 농가라는 용어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비교해 보면 ‘가족농(family farming)’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음.<sup>1</sup>
  - 가족농은 영문 ‘family farm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며, 본래 이 용어는 헨리 테일러(H. Taylor)의 저서(Agricultural Economics, 1919)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

<sup>1</sup> 가족농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김정호, 『가족농 연구;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2012)를 참조.

- 미국은 18세기 후반의 독립전쟁 이후 가족농이 보편화되었으며, 따라서 가족농이란 용어는 기업적 농업경영에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 당시의 가족농은 “가족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영”이라는 속성을 가진 가족노작농장 (family worked farm)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일컬어지는 농가는 서양의 가족농장과는 조금 다르며, ‘가(家)’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이 가구 단위의 가족제도 하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 주체임.
- 학계에서도 ‘가족적 농업경영(家族的 農業經營)’을 약칭하여 ‘가족농’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가족농 = 농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셈임.
  - 국어 사전(이승녕 국어사전)에서도 농가란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또는 그러한 집”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한 논의는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농지개혁법 제3조에서 “본 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家主(家主)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로 칭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이러한 개념을 통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1960년에 농업센서스(당시는 ‘농업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오늘날 농가 통계의 체계가 갖추어졌음.
- 농지개혁법은 가족주의와 자작농주의를 동시에 만족하는 농가를 농업경영의 단위로 공인한 제도임.
- 가족주의는 본래 세대를 이루는 가계(家系)를 생산의 단위로 인식한 것이며, 여기에는 경영과 생활이 미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성격을 내포함.
  - 자작농주의는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농업경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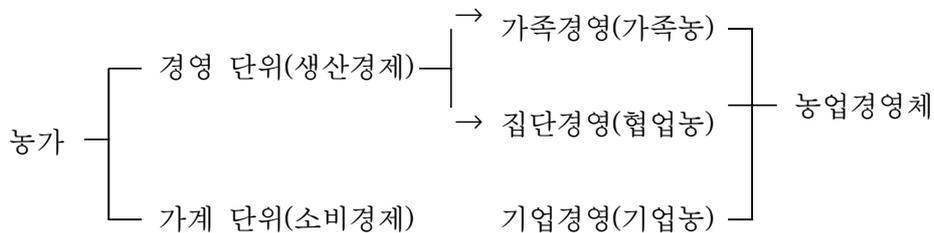
- 따라서 농가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에도 농업경영 주체로서 농가 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sup>2</sup>
- 이러한 배경으로 농업경영 주체로서 또는 농지소유 주체로서 농가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는 것이 현실임.
  -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농가의 성격이 농업 및 농업경영의 현실과 점차 괴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의 농지법 입법과정에서 농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음.
- 한편, 농가의 성격 변화와 함께 농업경영의 단위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농가 이외의 새로운 농업경영체임.
  -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에서 ‘준농가(準農家)’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왔으나,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준농가의 의미는 농가 이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였음.
  - 1980년대 들어 이탈농이 빠르게 증가하고 가족농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조직을 형성하는 등 종래의 농가가 아닌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다양하게 성립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기존의 ‘농가가 아닌 경영 단위’가 아니라 ‘농가를 구성원으로 한 새로운 경영 단위’가 다수 성립되었으며, 이들 영농조직 가운데 농업법인이란 새로운 농업경영체로 탄생하였음.
- 따라서 사회 통념적인 ‘농가’라고 칭하는 세대 단위의 용어를 농업경영체로 파악하는 것은 그 실제와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엄밀하게 말해서 농가는 경영 단위(생산경제)인 동시에 가계 단위(소비경

<sup>2</sup> 이에 대해서는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를 참조.

제)이며, 경제주체로서 농가의 경영과 가계를 분리하기 어려움.

- 농가의 속성에서 농업경영 부문을 떼어내면 ‘농가=가족농(가족적 농업경영체)’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리고 개인경영으로서의 가족농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적인 집단경영(협업농)이 성립할 수 있음.
- 한편, 기업농은 흔히 가족농과 대응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 기업농의 본래 의미는 경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기업적 농업경영체’임.

<그림 2-1> 농가와 농업경영체의 개념 체계



## 1.2. 농가 및 농업인의 법률적 정의와 기준의 변천 내용

### 1.2.1. 농지개혁법의 ‘농가’

- 우리나라의 농가(農家)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 1949.6.21)에서 비롯됨.
- 농지개혁법 제3조에서 규정한 농가는 경지의 경작자로서의 농가이며, ‘가족 단위 + 농업생산 단위’로서 농경이 주업인 ‘가구 단위’를 지칭하였음.
- 여기서 주업(主業)이란 거주 또는 동거가족이 노력의 반 이상으로써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도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며(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합법적 사회단위란 거주와 사실상 동거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단위라고 규정하였음(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 농지개혁 당시의 농가는 농업경영의 기본 요소인 경지(논, 밭, 과수원)를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표방하였던 것임.
  - 농지개혁 당시의 자작농주의(自作農主義)에 입각한 농가의 정의가 그 후 농지법 제정까지 불변의 원칙으로 고수되었던 점은 경험적인 사실임.
  - 특히 농가와 농민, 자경과 자영(自營), 주업과 겸업, 가호(家戶)와 세대주 등등 논란이 많았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농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들 용어에 관한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
  
- 농지개혁법의 농가 정의는 엄밀히 말해서 농지의 분배를 위한 농지소유 자격을 규정한 것이며, 아울러 농지개혁 과정에서 분배받은 농지가 농가의 재산(家産)으로 상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 농지개혁을 통하여 농지는 농가의 경영주에게 분배되지만, 일단 분배받은 농지는 농가의 재산으로 후계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농지 분배를 위한 농가 개념은 1954년에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 소유자의 자격을 규정하게 되었음.
  - 농지매매증명제도에서 농가는 ‘농경 종사 + 농촌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고, 농지매매증명은 농가의 가구원에게 발급하도록 하였음.<sup>3</sup>
  - 농지매매증명제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농업인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농경 종사자를 규정함으로써 “농지 소유자=농지 경작자”라는 틀을 유지한 것임.
  
- 농가의 농지소유 자격에 관한 규정은 1972년에 제정된 농지보전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373호, 1972.12.18)을 통해 농지원부의 형태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음.

---

3 농지매매증명 제도는 1994년 농지법 제정 이전까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지매매증명 발급요령’으로 시행되었음. 1996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 농지보전법에서 농가는 ‘1,000m<sup>2</sup>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농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로 규정했으며, 또한 이를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음. 준농가(準農家)’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을 말하며, 농지개혁법에서도 이들에 대한 농지소유를 인정했지만, 농지보전법에서 공식적으로 준농가로 명명한 것임.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작성하도록 하였음.
- 농지원부의 등록 대상은 1,000m<sup>2</sup>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 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됨. 아울러 농지원부는 주민등록 세대별로 작성하므로 농가의 세대주가 등록하도록 하였음.

### 1.2.2. 농지법안의 ‘농가’와 ‘농민’

- 농림부는 농지개혁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958년부터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자작농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농지법 제정을 구상하여, 1979년까지 6차에 걸쳐 농지법안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농지법 입법에는 실패함으로써 임시조치로 1986년에 「농지임대차관리법」(법률 제3888호, 1986.12.31.)을 제정하였음.
- 농지법안의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1970년 제4차 법안에서부터 농가가 아니라 ‘농민(農民)’을 규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농지 소유자로서의 개인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주목할 사항임.
  - 특히 제3차 농지법안에서는 “자영하는 자”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지소유 주체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였음. 즉, 농업의 자영자(自營者)는 영농에 필요한 경비·자재·장비 및 시설을 부담하여 자기책임하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임.

&lt;표 2-1&gt; 농지법안의 농가 정의 변천

구분	농가 및 농민의 용어 정의 내용
제1차 농지법안 (1958년)	농가: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써 구성되어 농경에 종사하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말함. 농가원: 농가의 구성원 농가구: 농가구원 중 농가를 대표하는 자
제2차 농지법안 (1961년)	제1차 농지법안과 동일
제3차 농지법안 (1968년)	자영하는 자: 영농에 필요한 경비·자재·장비 및 시설을 부담하여 자기책임 하에 농업을 경영하는 자
제4차 농지법안 (1970년)	농민: 소유농지를 자기 또는 동거가족의 일원이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도·감독하는 자
제5차 농지법안 (1974년)	농민: 농지소유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기경영 책임 하에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가: 농민의 가구 단위
제6차 농지법안 (1979년)	농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의거 자기책임 아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가: 농민의 가구 단위
농지임대차관리법 (1986년)	농가: 세대주 또는 그 동거가족이 농경에 종사하여 생활하는 가구 단위

자료: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 1.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민'

- 농지개혁법이나 농지법안의 농가는 농지소유 주체를 규정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농지제도 상의 농가만이 법률적인 '농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 이후의 농가 육성시책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음.
- 1980년대 들어 경종농업과 양축을 병행하는 복합영농이 장려되었는데, 예를 들어 농지(논, 밭, 과수원)를 경작하는 경종농가 이외의 축산농가도 '농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따라서 농지법에 농가를 새로 규정하기 보다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민’을 정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즉,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단위의 농가 정의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별 농민으로 재정립하게 된 것임.
- 1986년에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4228호, 1990.4.7.)을 제정하였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약칭 ‘농발법’) 제2조에서 ‘농어민(農漁民)’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세부적인 자격 기준을 규정하였음.
  - 농발법에서 규정한 농어민이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규정은 농업센서스에서 말하는 농가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따라서 농지의 경작자만이 아니라 축산업, 잠업, 과수업, 임업 등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농업노동자도 농민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음.
  -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어민은, ① 990m<sup>2</sup>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상자)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m<sup>2</sup>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m<sup>2</sup> 이상 경작하는 자 등임. 그리고 이와 함께 농업 이외의 ⑤ 신탄 생산자, ⑥ 어업 경영자 등을 농어민에 포함하였음.
-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구성원도 농어민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 법에서 처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였음.
  - 농발법의 규정을 원용하면, 농가는 농지제도 상의 농가와 그 밖의 ‘개인농가’, 그리고 개인농가에 준하는 영농조합법인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동법의 의의는 1967년의 농업기본법 이후부터 증가를 보인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협업농, 기업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임.

#### 1.2.4. 농지법의 '농업인'

- 1994년 제정된 「농지법」(법률 제4817호, 1994.12.22)에서는 농지의 소유·이용 주체로 '농업인'을 정의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농어민에 대한 논의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농지법 제2조에서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음.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범위로,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음.
  
- 초기의 농지법에는 농업인 기준에 농산물판매액 요건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미 1990년 농업총조사에서 농업수입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영농규모는 작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액은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농산물판매액 기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현실화되었음.
  - 2002년에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4호를 추가하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판매액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현행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즉, 농업인은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임.

### 1.2.5. 농업·농촌기본법 이후의 '농업인'

-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5758호, 1999.2.5.)은 농업·농촌 관련제도의 모법(母法)이 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 동법에서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으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였음.
- 「농업·농촌기본법」은 2007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8749호, 2007.12.21.)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면 개정되었음. 동법 시행령에서 농업인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다만, 농산물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농업법인 고용자가 추가되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설립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은 당연히 농업인이지만, 법인에 고용된 상근종사자를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현행의 법적인 농업인의 정의와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16229호, 2019.1.15.)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즉,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lt;표 2-2&gt; 법률상의 농가 및 농업인 정의 변천

관련 법률	농가 및 농업인 정의의 내용
농지개혁법 (1949년)	농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
농지보전법 (1972년)	농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준농가: 농업을 직접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년)	농어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99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④ 고등원예작물 또는 특수작물을 330㎡ 이상, 과수 또는 묘목을 660㎡ 이상 경작하는 자 ⑤ 신탄 생산자, ⑥ 어업 경영(종사)자
농지법 (1994년)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기본법 (1999년)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8년)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자료: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 농업인의 기준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82호, 2016.9.5.) 제3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① 1,000㎡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등임.

## 2.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통계적 농가의 개념 비교

### 2.1.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농업인 개념과 자격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 + 농업법인)가 자율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임.
- 그간의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2006년 12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안을 수립하여 2007년 9월에 시범사업 실시한 후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하였음.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된 후 2010년 1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 8월에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함.
- 농업인이 직접 주민등록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자재, 농자금 지원, 용자 등을 비롯하여 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상시관리시스템은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으로 진행되며, 변경등록은 주요정보 위주로 변경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과정으로 추진체계를 갖춘.
  - 2020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의거하여 농업인(=농업인경영체)으로 등록할 수 있는 농업인은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에 해당함.
- 농업경영체법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농업인 기준을 크게 3분류, 즉, 농지 경작자와 농산물 판매자 그리고 농업종사자로 구분했다는 점임. 따라서 경종농업 이외의 농업경영자는 모두 농산물 판매자의 기준에 포함되는 것임.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농업인은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구분됨.
- 경영주인 농업인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및 가족 외 농업종사자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94호)에 의거하여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동규정 제4조에 ‘농업인 확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 기준의 세부 항목은 <표 2-3>에 정리한 바와 같이 ① 농지의 경영·경작 기준, ② 농산물 판매액 기준, ③ 농업종사자 기준, ④ 농업법인 고용자 기준 등으로 구분됨.

<표 2-3>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법 시행령 기준	농업인 확인 기준
<p>농지의 경영·경작 기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p>	<p>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p>
<p>농산물 판매액 기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p>	<p>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p>

	<p>(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p> <p>(3) 밤나무 : 5천㎡ 이상</p> <p>(4) 잣나무 : 1만㎡ 이상</p> <p>(5) 표고자목 : 20세㎡ 이상</p> <p>(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p> <p>(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p> <p>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p> <p>(1)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p> <p>(2)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p> <p>(3)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p> <p>(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p> <p>(5) 농지에 1천㎡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p> <p>(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p>
<p>농업종사자 기준</p> <p>(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p>	<p>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p> <p>(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p> <p>(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p>

	<p>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p> <p>(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p> <p>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p>
<p>농업법인 고용자 기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p>	<p>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p>

자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발췌하여 작성.

## 2.2. 통계적 농가의 정의와 자격 기준

-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농가 통계는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농림부는 정부 수립과 동시에 각종 농업시책을 전개하면서 행정 통계로 농림기본통계와 농가경제통계를 발표하였음.
- 1950년대에 농림부가 작성한 농림기본통계는 농업경영의 기본 요소인 농경지 이용 및 농가와 농가 인구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대상인 농가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음.<sup>4</sup>
- 1953년 7월에 농림부와 한국은행 조사부가 합동으로 1년간 농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농가경제조사와 농산

<sup>4</sup> 1950년대의 통계를 집약한 『대한민국통계연감』(공보처 통계국, 1954) 창간호에 농가 호수와 인구 및 경지면적이 수록되어 있음.

물 생산비조사 등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따라서 당시에 농림통계나 농가경제조사에서 규정한 농가는 농지개혁법의 농가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한 것임.

○ 1960년에 처음으로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구주택조사(1960년 12월 1일 시행)와 농업조사(1961년 2월 1일 시행)를 실시하였음.

- 농업조사는 농림부 주관으로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한 것이며, 조사 대상인 농가는 농지제도에서 말하는 농가 개념으로 “경지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지칭하였음. 또한 통계적인 용어로 조사대상을 ‘농업사업체’로 지칭하고 그 형태를 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음.

○ 1970년에는 ‘농업센서스’로 개칭하고 농가의 기준도 대폭 보완하였음.

- 조사 대상인 농가는 조사일 기준으로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고등원예 특용작물 각각 3a 이상, 과수 묘목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소, 젖소, 고기소를 각각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돼지, 면양, 산양을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 토끼 40마리 이상, 가금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 꿀벌 5통 이상 치는 가구, ⑦ 누에씨 12g 이상 소잠하는 가구, ⑧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되는 가구, ⑨ 가구원 중 연간 농업노동 일수 90일 이상 동일인이 계속 30일 이상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 등으로 규정하였음.
- 또한 농가를 개인농가와 준농가로 구분하였는데, 준농가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후생단체 등임.

○ 1980년에는 ‘농업조사’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조사대상은 1970년 농업센서스 때에 정의된 농가의 기준 중 일부를 보완하였음.

- “복합경영한 농업수입 1만원 이상 되는 가구”를 “복합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규정한 각호별 수입 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임금 농업노동에 종사한 가구”를 삭제하였음.

- 1990년에는 ‘농업총조사’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1980년 총조사의 농가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농가 이외에 준농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농가는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를 다시 개인농가 및 준농가로 구분하였음.
  - 개인농가는 다음의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농가인데, ① 경지(논, 밭, 과수원)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작물 3a 이상, 과수나 묘목은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 1마리, 중소가축 3마리, 소가축 및 가금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등의 요건을 갖춘 가구 단위임.
  - 준농가는 “개인농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 단체(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로 정의하였음.
  
- 2000년 농업총조사는 농업통계 업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처음 실시되었으며, 농가를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음.
  - 조사대상 농가는 ① 논·밭 등 경지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임. 단,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농가에 포함하도록 함.
  
- 2010년부터는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실시하였으며, 농가의 기준으로 조사시점(2010년 12월 1일)의 농산물판매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 특징임.<sup>5</sup>
  - 조사대상 농가는 ① 현재 논이나 밭을 1,000m<sup>2</sup>(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규정함.

5 1970년에 수산청의 어업총조사, 1998년에 산림청의 임업총조사가 각각 실시되다가 2005년에 농업과 어업 및 임업총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2010년부터 3개의 총조사가 ‘농림어업총조사’라는 명칭으로 통합 실시되었음.

- 2015년부터는 농림어업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으며, 농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은 2010년 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농가를 규정하였음.<sup>6</sup>

<표 2-4> 농업총조사의 농가 정의와 조사 대상 변천

통계 명칭	농가의 정의와 조사 대상
1961년 농업국세조사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지(전,답,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1970년 농업센서스	①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중가축(돼지,양) 3마리 이상 사육, ⑤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꿀벌 5군 이상 사육, ⑦누에씨 12g(1상자) 이상 사육, ⑧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⑨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①~⑦ 1970년 농업센서스와 동일, ⑧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1990년 농업총조사	①경지 10a(약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시설작물 3a(약100평),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약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오리,거위,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0년 농업총조사	①논·밭 등 경지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5년 농업총조사	①논·밭 등 경지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③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①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①~③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동일

자료: 관련 통계자료에서 정리.

6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호, 2019.7.1.). 부록 참조.

- 이 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정의는 초기에 농지법 규정을 준용했으나, 1980년 조사부터는 농업경영 단위로 한정된 농가 개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 현재 통계적인 농가의 정의는 ‘농업경영 단위로서의 농가’를 의미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률적인 농업인 정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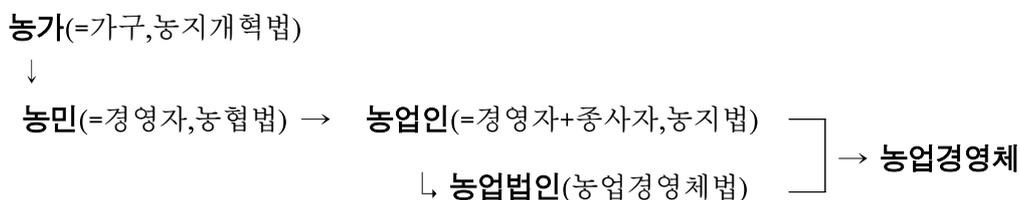
### 3. 농가와 농업인의 정의의 시대적 변화와 시사점

-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농(family farming)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농지개혁법을 시작으로 이러한 농업경영 단위를 ‘농가’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은 관행적으로 ‘농민’이라고 불려왔음.
  -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서 ‘농가(農家)’를 농업경영 주체인 동시에 농지소유 주체로 규정하였음.
  - 1957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농협의 조합원 자격으로 ‘농민(農民)’을 정의하였는데, 동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농민의 자격 요건에 대해 농지 경작 10단보, 농업종사 90일 등으로 규정하였음.
  - 1960년부터 실시된 농업센서스에서 농업경영 단위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농가의 가구원 중에서 농업경영자와 종사자를 구분하였음.
- 1970년대 들어 산업화 진전으로 농가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세대주와 농업경영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농지소유 주체를 규정하는 농지법에서 개인인 ‘농업인’을 규정하게 됨.
  - 1970년대 농지법안에서부터 농지소유 주체를 가구(家口)가 아닌 개인으로 바꾸어 ‘농민(農民)’을 규정하려는 논의가 시작됨.
  -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서 ‘농업인(農業人)’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농업인을 농지소유·이용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음.

-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지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농업인을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기본법 체계의 농업인 개념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 2009년 제정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도록 하여 정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림 2-2> 농가와 농업인의 법률적 용어 변천



- 농업인의 법률적 정의는 2008년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농업경영자와 농업종사자를 명확히 구분하였음.
- 농업경영자에 대해서는 농경지 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종농업 경영자를 기본으로 하여, 그 밖의 농업경영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농산물판매액 개념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 농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와 함께 영농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농업법인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것임.
- 현행 기본법에서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① 농지 경영자 : 1,000m<sup>2</sup>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② 농산물 판매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농업 종사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업법인 고용자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현행 농업인의 정의와 자격 기준에 대해 ‘농업’과 ‘농업경영자’ 및 ‘농업종사자(고용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농업의 범위 : 기본법에서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의 산업적 범위가 생산 품목만이 아니라 연관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정책 대상으로서 농업·임업·어업의 행정적인 중복성도 검토해야 할 과제임.
  - 농업경영자와 주업의 개념 : 농업경영자는 엄밀하게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을 의미하므로, 주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부업농이나 취미농과는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주업의 개념에는 수입 비중(농업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또는 근로일수 비중(농업종사일수가 총근로일수의 50% 이상)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업종사자의 개념 : 농업종사자나 농업고용자는 농업경영인에 부수적으로 추가된 농업인이며, 이러한 농업종사자 개념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총괄하면, 농업인 정의와 자격 기준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정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현행의 맞춤형 농정을 적확하게 운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통계적인 농가와 법률적인 농업인 그리고 농업경영체의 개념에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 정의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농업인은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이지만, 농업경영자와 농업종사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통계정보에서는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의 관계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할 것임.

## 제 3 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통계의 관계 분석

#### 1. 농업경영체 등록의 내용 및 농업인 주요지표 동향

##### 1.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sup>7)</sup>

###### (1) 추진 배경

- 농업 문제의 핵심인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의 추진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하여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2) 추진 체계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자율등록을 기본으로 하며,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등록된 경영체 정보를 상시관리함.  
※ 농업인확인서 증명제도와 연계하여 사실 확인의 근거가 됨.

<sup>7)</su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에서 발췌 정리(2020년 11월 20일 접속).

### (3) 신규 등록의 대상과 방법

-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등록 요건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기준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4) 변경 등록의 대상과 방법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 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 등록정보
  - 인적 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 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가축·곤충 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 정보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 제외 대상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
-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 (5) 등록정보 확인(열람)

-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 번호, 농가 구분(경종/축산) 등
- 확인(열람) 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확인(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 1.2.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699천 개(그 중 농업법인 13천 개)로서 최근 5년간 총 10만 2천 개가 늘어나 연평균 1.28% 증가율을 나타냄.
  - 농업인(경영주)은 2015년 1,589,795명에서 2019년 1,686,068명으로 5년간 96,273명이 증가하였고, 농업법인은 동기간 7,228개에서 12,980개로 5년간 5,752개가 증가하였음.
  - 특히 농업인(경영주) 등록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비율은 2016년 1.9%에서 2017년 1.7%, 2018년 0.9%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19년에는 1.7%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2019년에 농업인(경영주) 등록이 증가 경향을 나타낸 이유는 직접지불제 개편(공익직불제 도입), 농업인 확인서 증명 등의 수단으로 활용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sup>8</sup>

<표 3-1>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15~2019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경영체 합계	1,597,023	1,627,185	1,655,319	1,670,227	1,699,048
전년대비	-	30,162 (1.9)	28,134 (1.7)	14,908 (0.9)	28,821 (1.7)
농업인(경영주)	1,589,795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전년대비	-	28,559 (1.8)	26,545 (1.6)	13,728 (0.8)	27,441 (1.7)
농업법인	7,228	8,831	10,420	11,600	12,980
전년대비	-	1,603 (22.2)	1,589 (18.0)	1,180 (11.3)	1,380 (11.9)

주: ( ) 내는 전년 대비 변화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sup>8</su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업인(경영주)과 농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하 본고에서는 농업인(경영주)의 명칭을 ‘농업인경영체’로 약칭하고자 함.

### 1.3. 농업인경영체의 인력 현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경영주인 농업인(=농업경영주)과 경영주 외 농업인(=농업종사자)으로 구성되며, 최근의 동향을 보면 농업경영주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농업종사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농업경영주는 2015년 1,590천 명에서 2019년 1,686천 명으로 5년간 96천 명이 증가하였고, 경영주와 함께 영농하는 농업종사자는 동기간 993천 명에서 761천 명으로 232천 명이 감소하였음.
- 또한 농업경영주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5년 1,124천 명에서 2019년 1,220천 명으로 5년간 96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동기간 396천 명에서 466천 명으로 70천 명이 증가하였음.
- 농업경영주와 종사자를 합한 전체 농업인 수는 2015년 2,582천 명에서 2019년 2,447천 명으로 5년간 135천 명이 감소하였음.
- 경영주가 증가하는 이유는 귀농 등 신규 진입 인력의 증가, 그리고 경영주 외 농업인 가운데 청년·여성 농업인이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하여 경영주로 전환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전체 농업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고령화 등에 따른 사망 및 노동력 상실 등 자연 감소와 아울러 후계인력의 신규 진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3-2> 농업인경영체 경영주와 종사자의 성별 분포 변화(2015~2019년)

단위: 천 명, (%)

성별	2015년 전체: 2,582		2016년 전체: 2,546		2017년 전체: 2,466		2018년 전체: 2,443		2019년 전체: 2,447	
	경영주	경영주 외								
남	1,194 (75.1)	164 (16.5)	1,202 (74.3)	148 (15.9)	1,210 (73.6)	116 (14.4)	1,210 (73.0)	110 (14.0)	1,220 (72.4)	107 (14.1)
여	396 (24.9)	828 (83.5)	416 (25.7)	779 (83.9)	435 (26.4)	705 (85.9)	448 (27.0)	675 (86.1)	466 (27.6)	654 (85.9)
합계	1,590 (100.0)	993 (100.0)	1,618 (100.0)	927 (100.0)	1,645 (100.0)	821 (100.0)	1,659 (100.0)	784 (100.0)	1,686 (100.0)	761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업경영체의 인적 구성으로, 경영주 외 농업인의 가족 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부모, 자녀, 기타 등의 순임.
  - 가족 중 배우자는 2016년 773천 명(83.4%)에서 2019년 644천 명(84.7%)으로 감소하였는데, 공동경영주로 전환한 배우자가 증가한 것임.
  - 2019년 경영주 외 농업인 총 761천 명 중에 경영주 가족이 759천 명(99.8%)이고, 가족외 농업인은 1.7천 명(0.2%)으로 집계됨.

<표 3-3> 경영주 외 농업인의 가족 관계 및 구성 변화(2016~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족	배우자	773,497 (83.4)	696,407 (84.8)	666,297 (85.0)	644,280 (84.7)
	공동경영주	13,362 (1.4)	22,557 (2.7)	26,822 (3.4)	35,925 (4.7)
	부모	72,630 (7.8)	71,813 (8.7)	70,933 (9.0)	71,451 (9.4)
	자녀	68,218 (7.4)	42,395 (5.2)	37,851 (4.8)	36,188 (4.8)
	기타	10,506 (1.1)	8,384 (1.0)	7,500 (1.0)	6,839 (0.9)
	계	924,851 (99.7)	818,999 (99.8)	782,581 (99.8)	758,758 (99.8)
가족 외	고용인	62 (0.0)	462 (0.1)	475 (0.1)	403 (0.1)
	기타	2,107 (0.2)	1,537 (0.2)	1,283 (0.2)	1,339 (0.2)
	계	2,169 (0.2)	1,999 (0.2)	1,758 (0.2)	1,742 (0.2)
	합계	927,171 (100.0)	820,998 (100.0)	784,339 (100.0)	760,500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업경영주 중에 타산업에서 전환한 농업경영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은 영농후계자로서 귀농하여 경영주로 정착한 경우와 타산업에 종사하다가 귀촌하여 생활하면서 나중에 영농을 창업한 경우로 구분됨.
  - 타산업에서 전환한 농업경영주 수는 2015년 397천 명에서 2019년 799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경영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25.0%에서 47.4%로 증가하였음.
  - 한편, 2019년 현재 타산업 전환 농업경영주의 영농경력을 보면, 5년 이내 28.1%, 10년 이내 44.1%, 20년 이내 76.1% 등으로 나타남.

&lt;표 3-4&gt; 타산업에서 전환한 농업경영주의 비율 변화(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경영주	1,589,795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타산업에서 전환 경영주	397,367 (25.0)	591,166 (36.5)	674,336 (41.0)	741,086 (44.7)	799,194 (47.4)

주: 타산업에서 전환한 농업경영주는 과거에 농업 이외의 직업에 연속적으로 2년 이상 종사했거나  
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한 사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및 청년창업농업인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후계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영주는 2015년 89,560명에서 2018년 99,583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97,634명으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성장단계(7~10년) 후계농업인이 농업경영주로 분리 독립하였기 때문임.

&lt;표 3-5&gt;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구성 변화(2015~2019년)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후계농업인	89,560	95,494	96,146	99,583	97,634
- 초기단계(1~3년)	23,483	29,369	30,951	34,877	35,786
- 정착단계(4~6년)	31,695	30,807	28,200	27,764	29,448
- 성장단계(7~10년)	34,382	36,318	36,995	36,952	32,400
청년농업인	37,406	37,480	37,830	39,334	40,192
청년창업농업인	7,142	8,988	10,159	12,426	13,57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체 여성농업인 수와 그 비율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경영주와 그 비율은 2015년 396천 명(24.9%)에서 2019년 466천 명(27.6%)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여성경영주가 증가하고 전체 경영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lt;표 3-6&gt; 여성농업인 및 여성경영주 현황(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농업인 수 (비율)	1,224,379 (47.4)	1,195,309 (47.0)	1,140,299 (46.2)	1,122,712 (46.0)	1,119,590 (45.8)
여성경영주 수 (비율)	396,034 (24.9)	416,460 (25.7)	435,041 (26.4)	448,337 (27.0)	465,683 (27.6)

주: 비율(%)은 전체 농업인 및 경영주에 대한 비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1.4. 농업인경영체의 농업경영 현황

- 2019년 기준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주(농업법인 및 축산 경영주 제외)는 1,659천 명이고 경작면적은 총 1,417천ha(평균 0.85ha), 재배면적은 총 1,565천ha(평균 0.94ha)로 집계되었음.
- 농지를 경작하는 여성농업경영주는 460천 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246천ha로 전체 경작면적의 17.4%를 차지하고 재배면적은 265천ha로 16.9%를 차지함.
- 또한 농지를 경작하는 청년경영주는 37천 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36천ha로 전체 경작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재배면적은 42천ha로 2.7%를 차지함.

&lt;표 3-7&gt; 농업인경영체의 경작면적 및 재배면적 현황(2019년)

단위: 명, ha, (%)

구분	경영주 수	실제 경작면적		재배면적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경영주	1,658,785	1,417,217	0.85	1,565,061	0.94
여성경영주	460,365 (27.8)	245,900 (17.4)	0.53	265,173 (16.9)	0.58
청년경영주	37,316 (2.2)	35,722 (2.5)	0.96	42,318 (2.7)	1.13

주: 비율(%)은 전체 농업인 및 경작면적에 대한 비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2019년 기준으로 시설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주(농업법인 및 축산 경영주 제외)는 221천 명이고 경작면적은 총 63천ha(평균 0.28ha), 재배면적은 총 82천ha(평균 0.37ha)로서 시설활용율은 130%로 집계되었음.
- 이 중 여성경영주는 40천 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8.8천ha로 전체 경작면적의 14.0%를 차지하고, 재배면적은 11.7천ha로서 시설활용율은 132%에 달함.
- 또한 청년경영주는 6.7천 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2.4천ha로 전체 경작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재배면적은 3.5천ha로서 시설활용율은 145%에 달함.

<표 3-8> 농업인경영체의 시설재배 현황(2019년)

단위: 명, ha, (%)

구분	경영주 수	실제 시설 경작면적	시설 재배면적	시설 활용률	평균 경작면적	평균 재배면적
전체 경영주	221,378	63,091	82,258	130.4	0.28	0.37
여성경영주	39,736 (17.9)	8,809 (14.0)	11,656 (14.2)	132.3	0.22	0.29
청년경영주	6,672 (3.0)	2,421 (3.8)	3,518 (4.3)	145.3	0.36	0.5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2019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주의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과 비율을 보면, 주요 5개 품목은 벼 701천ha(44.1%), 콩 77천ha(4.9%), 사료작물 45.8천ha(2.9%), 건고추 45.3천ha(2.8%), 사과 35.5천ha(2.2%) 순으로 집계되었음.
- 여성경영주의 주요 재배품목 면적 비율은 벼(40.7%), 콩(6.0), 건고추(3.8), 들깨(3.1), 참깨(2.0) 순으로, 전체 경영주의 재배면적 비율과 비교하면 벼는 상대적으로 덜 재배하고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경영주의 주요 재배 품목면적 비율은 벼(39.0%), 사료작물(2.7), 콩(4.8), 쌀보리(3.0), 인삼(2.8) 순으로, 전체 경영주의 재배면적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9&gt; 농업인 경영주의 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2019년)

단위: ha, %

작물명	전체		작물명	여성농업인		작물명	청년농업인	
	재배면적	비율		재배면적	비율		재배면적	비율
벼	701,464	44.1	벼	107,947	40.7	벼	16494	39.0
콩	77,220	4.9	콩	15,976	6.0	사료작물	2415	2.7
사료작물	45,762	2.9	건고추	9,970	3.8	콩	2035	4.8
건고추	45,321	2.8	들깨	8,251	3.1	쌀보리	1258	3.0
사과	35,488	2.2	참깨	5,349	2.0	인삼	1164	2.8
들깨	32,338	2.0	밤	4,849	1.8	사과	903	2.1
밤	26,234	1.6	사과	4,646	1.8	조사료	769	1.8
쌀보리	24,274	1.5	고구마	4,579	1.7	고구마	664	1.6
고구마	21,442	1.3	사료작물	4,545	1.7	조사료기타	570	1.3
참깨	20,475	1.3	마늘	4,471	1.7	감귤	549	1.3
마늘	20,232	1.3	뽕은감	4,074	1.5	건고추	484	1.1
복숭아	19,845	1.2	매실	3,919	1.5	양파	453	1.1
인삼	19,537	1.2	쌀보리	3,286	1.2	겉보리	450	1.1
뽕은감	18,703	1.2	감귤	3,141	1.2	옥수수	445	1.1
감자	18,435	1.2	감자	2,949	1.1	감자	442	1.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2019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주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소(한우, 육우, 젃소), 벌, 닭(육용, 난용), 돼지, 오리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그리고 여성경영주의 사육 축종은 전체 경영주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청년경영주는 소, 닭, 돼지, 벌, 오리 등의 순으로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10&gt; 농업인 경영주의 가축 사육 현황(2019년)

단위: 명, %

가축명	전체 경영주		여성경영주		청년경영주	
	경영주 수	비율	경영주 수	비율	경영주 수	비율
소	125,226	67.0	12,604	62.1	5,822	76.0
돼지	6,350	3.4	802	4.0	514	6.7
닭	10,267	5.5	1,733	8.5	726	9.5
오리	1,856	1.0	367	1.8	123	1.6
벌	22,102	11.8	2,839	14.0	474	6.2

주: 비율(%)은 전체 농업경영주에 대한 비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2. 농업총조사의 내용 및 농가 주요지표 동향

### 2.1. 농림어업총조사(2020년) 개요<sup>9</sup>

#### (1) 조사 목적

-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파악
- 소지역(행정리) 단위의 경제활동, 생활 기반시설 등 통계 생산
- 농림어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표본조사의 표본추출 틀로 활용
- FAO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며 국가 간의 자료 비교 및 교환, 평가자료 활용

#### (2) 조사 대상

- 지역 :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
- 농가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2020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 12. 1.~2020.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0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3) 조사 방법

- 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방문 면접조사 : 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임가·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항목에 대하여 질문하고 조사표를 작성
  - 인터넷 조사 : 조사대상 농가·임가·어의 응답자가 인터넷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

<sup>9</sup>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발췌 정리(2020년 11월 20일 접속).

-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시
- 농림어가 대상의 방문면접조사는 시·군·구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수행하며,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조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행정리장이 대표로 응답

#### (4) 조사 내용

- 농림어업 공통(15개 항목)
  - 가구원(9개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농림어업 종사기간, 농림어업 종사형태, 농림어업 주종사 부문, 농림어업 외 종사기간, 주종사 분야
  - 경영주 특성(3개 항목) : 농림어업 종사 경력, 교육 정도, 혼인 상태
  - 공통 사항(3개 항목) : 정보화기기 보유, 정보화기기 활용, 교통수단 보유
- 농업 부문(31개 항목)
  - 농업 생산(22개 항목) : 논 면적, 논벼 재배면적, 논벼 유기비료, 논벼 농사방법, 모내기 준비기물관리, 논벼 성장기물관리, 논벼 벗짚처리, 밭 면적, 식량작물, 시설(온실), 시설작물, 수경재배, 주요 과수 및 재배시설, 주요 과수 재배면적, 기타 과수, 시·군·구 작물, 가축, 축사 형태, 가축 분뇨처리, 목초지, 채소, 특용작물, 화초작물, 기타 작물,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 농업 경영(9개 항목) : 경영 형태, 판매 금액, 판매처, 농업 고용, 농기계 보유, 영농 지역, 생산자조직 참여, 농업 관련사업 전업 및 겸업
- 지역 조사(15개 항목)
  - 기본사항(4개 항목) : 읍(면)사무소 소재지, 자연 마을(부락), 빈집, 폐교 현황
  - 교통·편의 시설(4개 항목) : 대중교통, 시내(군내, 마을)버스 정류장, 생활편의시설, 생활 기반시설
  - 농림어업 관련 시설(2개 항목) : 농림업 관련시설, 어업 관련시설
  - 농산어촌 경제활동(3개 항목) : 농어업법인 및 조직, 생산자조직, 도농 교류
  - 공동체·쓰레기 처리(2개 항목) : 마을공동체 활동, 쓰레기 처리

## 2.2. 농가 통계의 주요지표 추이

- 196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농가 통계의 주요 지표를 개관해 보면, 농가 및 농업종사자 수가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겸업농과 임차농이 증가하는 농업경영구조 변화를 보여 왔음.
- 농가 호수는 최고 수준이었던 1965년 250만호 수준에서 2015년 109만호로 연평균 1.02%씩 감소함으로써 최고 수준과 비교하여 약 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가구원 수는 38% 수준으로, 농업종사자 수는 66%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농가 수의 빠른 감소에 비하여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호당 경영지면적은 0.86ha에서 1.54ha로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자작지 면적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임차지가 증가한 것임.

<표 3-11> 농가 통계의 주요지표 추이(1960~2015년)

연도	총농가 수		가족 구성		농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총호수	전업농 비율	가구원	농업 종사자	총계	논	밭	경영지	자작지	임차지 비율
	천호	%	인	인	천ha	천ha	천ha	ha	ha	%
1960	2,349	90.7	-	-	2,042	1,216	825	0.86	0.74	13.5
1965	2,507	90.8	6.3	3.2	2,256	1,286	970	0.90	0.75	16.4
1970	2,443	67.7	5.8	2.9	2,298	1,273	1,025	0.93	0.77	17.6
1975	2,285	80.6	5.6	2.9	2,240	1,277	963	0.94	0.81	13.7
1980	2,155	76.2	5.0	2.5	2,196	1,307	889	1.02	0.80	21.3
1985	1,926	78.8	4.4	2.5	2,144	1,325	819	1.11	0.77	30.5
1990	1,767	59.6	3.8	2.2	2,109	1,345	764	1.19	0.75	37.4
1995	1,501	56.6	3.2	2.1	1,985	1,206	779	1.32	0.79	42.2
2000	1,383	65.2	2.9	2.2	1,889	1,149	740	1.37	0.77	43.6
2005	1,273	62.5	2.8	2.3	1,824	1,105	719	1.43	0.87	39.1
2010	1,177	53.3	2.6	2.2	1,715	984	731	1.47	0.77	47.9
2015	1,089	55.0	2.4	2.1	1,679	908	771	1.54	0.76	5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2.3. 농가 통계의 인력 구조

-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인력 구조는 가구주와 가구원 그리고 농업종사자로 구분하여 그 구성과 형태를 파악하는 것임.
- 농가 가구주의 농업경영 참여 정도에 따라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하는데, 전업농가는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임.
- 농가인구의 구성을 보면(표 3-12),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많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구원 수의 분포를 보면(표 3-14), 2인 가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1인 가구까지 합하면 70%에 달하여 핵가족화 현상이 뚜렷함.
-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및 성별 분포를 보면(표 3-13), 50대 이후의 여성농업인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12> 농가의 인력 구성 변화(1990~2015년)

단위: 호,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농가	1,767,033	1,500,745	1,383,468	1,272,908	1,177,318	1,088,518
전업	1,052,315	849,053	902,149	796,220	627,460	598,466
겸업	714,718	651,692	481,319	476,688	549,858	490,052
농가인구	6,66,1322	4,851,080	4,031,065	3,433,573	3,062,956	2,569,387
남	3,278,764	2,372,999	1,970,989	1,676,592	1,501,064	1,264,652
여	3,382,558	2,478,081	2,060,076	1,756,981	1,561,892	1,304,735
농업종사자	4,240,067	3,294,546	2,795,408	2,428,044	2,189,499	1,984 185
남	2,122,930	1,633,342	1,372,402	1,206,317	1,103,558	1,002 365
여	2,117,137	1,661,204	1,423,006	1,221,727	1,085,941	981,82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1990, 2000, 2010, 2015년) 및 농림어업조사(1995, 2005년).

<표 3-13> 농가 농업종사자의 연령별·성별 분포(2015년)

단위: 천명, (%)

성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남	52 (5.2)	104 (10.4)	240 (24.0)	290 (29.0)	244 (24.3)	71 (7.1)	1,002 (100)
여	35 (3.6)	89 (9.1)	246 (25.0)	294 (29.9)	250 (25.5)	68 (6.9)	982 (100)
합계	87 (4.4)	194 (9.8)	486 (24.5)	584 (29.4)	494 (24.9)	139 (7.0)	1,984 (1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lt;표 3-14&gt; 농가 가구원수와 농업종사가구원수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호, (%)

가구원 농업종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계
1인	201,240 (100.0)	46,674 (8.4)	19,872 (12.1)	14,291 (14.9)	5,578 (12.6)	1,423 (7.8)	256 (5.8)	62 (4.4)	289,396 (26.6)
2인	-	512,241 (91.6)	96,742 (59.1)	58,579 (61.0)	23,394 (52.7)	7,095 (38.8)	1,380 (31.0)	415 (29.1)	699,846 (64.3)
3인	-	-	47,165 (28.8)	12,596 (13.1)	9,804 (22.1)	4,937 (27.0)	1,081 (24.3)	296 (20.8)	75,879 (7.0)
4인 이상	-	-	-	10,553 (11.0)	5,653 (12.7)	4,812 (26.3)	1,728 (38.9)	651 (45.7)	23,397 (2.1)
전체	201,240 (100.0)	558,915 (100.0)	163,779 (100.0)	96,019 (100.0)	44,429 (100.0)	18,267 (100.0)	4,445 (100.0)	1,424 (100.0)	1,085,518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통하여 총조사의 시계열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여 ‘농림어업 조사’라는 명칭으로 공표하고 있음.

- 2019년 농가 통계에서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및 종사기간별 분포를 보면, 고령농업인일수록 농업종사기간도 많아서 농가와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임.

&lt;표 3-15&gt; 농가의 농업종사자 연령별/종사기간별 분포(2019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농업종사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합계	2,147,353 (100.0)	322,491 (15.0)	36,418 (1.7)	137,218 (6.4)	320,486 (14.9)	1,330,739 (62.0)
15~19세	54,310 (2.5)	53,440	330	291	116	133
20~29세	106,968 (5.0)	89,260	4,630	4,491	2,736	5,851
30~39세	95,441 (4.4)	51,772	6,697	10,856	7,847	18,268
40~49세	152,067 (7.1)	30,528	7,143	22,863	31,876	59,656
50~59세	378,668 (17.6)	24,647	7,650	39,987	88,364	217,989
60~69세	607,250 (28.3)	16,563	5,145	32,644	99,456	453,442
70세 이상	752,650 (35.1)	56,281	4,823	26,086	90,060	575,4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4. 농가 통계의 농업경영 현황

- 농가 통계에서는 농업생산의 품목과 규모를 조사함으로써 농업경영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의 주목되는 특징은 1990년대 들어서 농가의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경지규모별로 농가 분포의 추이를 보면(표 3-16), 0.5ha 미만의 소농층과 3ha 이상의 대농층이 증가하는 반면에, 0.5~3.0ha 중농층이 감소하는 이른바 양극분화(兩極分化)가 진행되고 있음.
  - 영농형태별로 농가 분포의 추이를 보면(표 3-17), 논벼 농가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소득작목이라고 일컬어지는 채소와 과수 등 원예 농가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경향임.
  - 결과적으로, 농산물 판매금액별로 농가 분포의 추이를 보면(표 3-18), 판매금액 3천만 원을 경계로 그 이하의 농가 계층은 감소하고 3천만 원 이상의 농가 계층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3-16> 농가의 경지규모별 구성 변화(1990~2015년)

단위: 천호, (%)

경지면적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경지없는 농가	24 (1.3)	24 (1.6)	14 (1.0)	17 (1.3)	14 (1.2)	10 (1.0)
0.1ha 미만	15 (0.8)	16 (1.0)	30 (2.0)	38 (3.0)	23 (1.9)	22 (2.0)
0.1~0.3ha 미만	218 (12.3)	201 (13.4)	203 (14.7)	216 (17.0)	251 (21.3)	270 (24.8)
0.3~0.5ha 미만	250 (14.2)	216 (14.4)	207 (15.0)	203 (16.0)	199 (16.9)	194 (17.8)
0.5~0.7ha 미만	235 (13.3)	191 (12.8)	169 (12.2)	152 (12.0)	137 (11.6)	125 (11.5)
0.7~1.0ha 미만	309 (17.5)	241 (16.0)	209 (15.1)	178 (14.0)	151 (12.8)	131 (12.0)
1.0~1.5ha 미만	352 (19.9)	265 (17.7)	219 (15.9)	174 (13.7)	142 (12.0)	114 (10.5)
1.5~2.0ha 미만	191 (10.8)	153 (10.2)	132 (9.5)	107 (8.4)	87 (7.4)	71 (6.5)
2.0~2.5ha 미만	88 (5.0)	80 (5.3)	70 (5.1)	56 (4.4)	47 (4.0)	36 (3.3)
2.5~3.0ha 미만	41 (2.3)	44 (2.9)	44 (3.1)	37 (2.9)	32 (2.7)	26 (2.4)
3.0~5.0ha 미만		55 (3.7)	61 (4.4)	61 (4.8)	57 (4.8)	49 (4.5)
5.0~10.0ha 미만	44 (2.5)	14 (0.9)	20 (1.5)	27 (2.1)	30 (2.6)	29 (2.7)
10.0ha 이상		2 (0.1)	3 (0.2)	6 (0.5)	9 (0.8)	10 (0.9)
합계	1,767 (100)	1,501 (100)	1,383 (100)	1,273 (100)	1,177 (100)	1,089 (1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1990, 2000, 2010, 2015년) 및 농림어업조사(1995, 2005년).

&lt;표 3-17&gt; 농가의 영농형태별 구성 변화(1990~2015년)

단위: 천호, (%)

영농형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논벼	1,232 (69.7)	823 (54.9)	787 (56.9)	648 (50.9)	523 (44.4)	454 (41.7)
식량작물	114 (6.5)	70 (4.7)	92 (6.6)	126 (9.9)	116 (9.9)	138 (12.7)
채소·산나물	172 (9.8)	247 (16.4)	238 (17.2)	230 (18.1)	224 (19.0)	198 (18.2)
특용작물·버섯	39 (2.2)	46 (3.0)	38 (2.7)	28 (2.2)	28 (2.4)	39 (3.5)
과수	107 (6.1)	144 (9.6)	143 (10.4)	145 (11.4)	170 (14.5)	172 (15.8)
화초·관상작물	6 (0.4)	10 (0.7)	8 (0.6)	10 (0.8)	19 (1.6)	14 (1.3)
기타작물	8 (0.4)	5 (0.4)	5 (0.3)	3 (0.3)	16 (1.4)	20 (1.9)
축산	89 (5.0)	156 (10.4)	72 (5.2)	82 (6.5)	81 (6.9)	53 (4.9)
합계	1,767 (100)	1,501 (100)	1,383 (100)	1,273 (100)	1,177 (100)	1,089 (100)

주: 영농형태는 주된 생산품목에 따른 구분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1990, 2000, 2010, 2015년) 및 농림어업조사(1995, 2005년).

&lt;표 3-18&gt;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별 구성 변화(1990~2015년)

단위: 천호, (%)

판매금액	1995	2000	2005	2010	2015
판매없음	N/A	91 (6.5)	120 (9.5)	125 (10.6)	122 (11.2)
500만 원 미만	710 (47.3)	577 (41.7)	537 (42.2)	500 (42.5)	463 (42.6)
500-1,000만 원	354 (23.6)	291 (21.0)	211 (16.6)	173 (14.7)	153 (14.1)
1,000-3,000만 원	371 (24.7)	335 (24.2)	273 (21.4)	226 (19.2)	198 (18.2)
3,000-5,000만 원	54 (3.6)	60 (4.3)	73 (5.7)	73 (6.2)	67 (6.2)
5,000만 원 이상	13 (0.9)	31 (2.2)	58 (4.5)	79 (6.7)	85 (7.8)
합계	1,501 (100.0)	1,383 (100.0)	1,273 (100.0)	1,177 (100.0)	1,089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1990, 2000, 2010, 2015년) 및 농림어업조사(1995, 2005년).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주된 생산품목을 기초로 영농형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매년도 농업생산 품목과 영농규모(재배면적, 사육두수) 현황에 대해서는 농림어업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 2015년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영농형태별 및 판매금액별 분포를 보면, 자가소비용 품목과 상업적 판매용 품목이 구분되며, 특히 논벼, 채소, 축산 등은 판매액이 많은 상업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서 영농형태별 및 농업종사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주요 품목에 대하여 대체로 2인 농업종사자의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3-19> 농가의 영농형태별 판매금액 분포(2015년)

단위: 천호, (%)

영농형태 판매액	논벼	식량 작물	채소· 산나 물	특용 작물 ·버섯	과수	약용 작물	화초· 관상 작물	기타 작물	축산	합계
판매없음	50 (11.1)	47 (34.3)	8 (4.1)	2 (6.3)	6 (3.5)	2 (14.8)	4 (29.1)	4 (5.6)	1 (2.6)	122 (11.2)
1,000만 원 미만	283 (62.4)	78 (56.4)	116 (58.6)	29 (74.4)	82 (47.9)	6 (53.4)	5 (34.6)	5 (54.4)	12 (22.9)	616 (56.6)
1,000~3, 000만 원	81 (17.9)	8 (6.1)	36 (18.4)	3 (9.0)	48 (27.9)	2 (19.9)	2 (16.2)	2 (20.9)	14 (25.4)	198 (18.2)
3,000만 원 이상	39 (8.6)	4 (3.2)	37 (18.9)	4 (10.2)	35 (20.7)	1 (11.8)	3 (20.1)	2 (19.2)	26 (49.1)	153 (14.0)
합계	454 (100)	138 (100)	198 (100)	39 (100)	172 (100)	10 (100)	14 (100)	10 (100)	53 (100)	1,089 (1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표 3-20> 농가의 영농형태별/농업종사가구원수별 분포(2019년)

단위: 호, (%)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국	1,007,158 (100.0)	299,884 (29.8)	644,832 (64.0)	51,857 (5.1)	10,585 (1.1)
논벼	393,841 (39.1)	122,911	246,859 (64.3)	20,428	3,643
식량작물	95,471 (9.5)	33,687	56,881 (59.6)	3,961	942
채소·산나물	229,377 (22.7)	68,133	148,716 (64.8)	10,675	1,853
특용작물·버섯	42,044 (4.2)	14,944	24,659 (58.7)	1,837	603
과수	170,688 (17.0)	42,149	117,365 (68.8)	9,101	2,072
약용작물	6,951 (0.7)	1,919	4,600 (66.2)	336	96
화초·관상작물	11,825 (1.2)	3,700	7,244 (61.3)	732	149
기타작물	3,864 (0.4)	1,271	2,268 (58.7)	223	103
축산	53,098 (5.2)	11,170	36,240 (68.3)	4,563	1,12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3.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용어 비교

#### 2.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주요내용 비교

##### ○ 조사·등록 대상

- 조사·등록 대상은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주 단위이고, 농업총조사는 가구주 단위임.

※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기준 : 농지 경작면적 1,000m<sup>2</sup>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종사일수 90일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 정책사업의 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등록함.
- 농업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채용된 조사원이 농가의 기준에 맞는 가구에 대해 조사함.

##### ○ 조사·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주가 주민등록지에서 연중 수시로 등록하며, 등록 농가에 대해 농관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정보를 확인함.
- 농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구 단위로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함.

##### ○ 조사·등록 항목

- 농업경영체 등록의 항목은 농업경영·생산구조(인력구조, 작물생산, 가축사육)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농업총조사의 조사 항목은 농가의 농업경영·생산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사품목을 늘려왔으며,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유통가공 및 소득 자산 등의 농업경영 항목을 추가함.

&lt;표 3-21&gt;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추진 체계	농업인의 자율등록 → 농관원의 상시 관리, 분석자료집 및 연감 공표 ※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등록	주관: 통계청,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 통계청에서 집계, 국가통계로 공표
대상	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①1,000㎡ 이상 농지 경작 ②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등 재배 ③330㎡ 이상 고정식시설하우스 재배 ④330㎡ 이상 고정식시설에 축산업 종사 ⑤곤충 사육업 및 양봉업 기준 ⑥콩나물·버섯 재배업 기준 ⑦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	전국의 농가 ①논이나 밭을 1,000㎡ 이상 직접경작 하는 가구 ②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조사 등록 방식	연중 수시 등록 ※등록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등록정보 현행화	5년마다 총조사 ※전국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채용된 조사원이 농가의 기준에 맞는 가구에 대해 조사
조사 항목	• 인력구조: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인적사항, 영농기간, 전업, 겸업 등	• 인력구조: 가구원 인적사항, 농업종사기간, 종사 형태, 주종사 분야 등
	• 작물생산: 등록품목(734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이용현황, 시설현황 등	• 작물생산: 84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경작형태, 보유형태, 시설현황 등
	• 가축사육: 축산 25품목에 대한 사육두수 및 시설 등	• 가축사육: 가축 13개 품목에 대한 사육두수, 축사형태 등
	• 유통가공: 조사 제외	• 유통가공: 판매구간별, 경영형태, 주 판매처, 생산자 조직 등
	• 소득·자산: 조사 제외	• 소득·자산: 농업관련사업, 전업, 겸업, 농기계 보유대수 등
	• 기타사항: 직접지불금 연계정보	• 기타사항: 정보화, 교통, 난방, 주거 등

자료: 소관기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2.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 및 용어 비교

- 이하에서는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2015년 및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조사항목에 대하여 유사한 용어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
  - 상세한 용어 정의와 설명 자료는 <표 3-22>와 <표 3-23> 및 <표 3-24>를 참조할 수 있음.

### 2.2.1. 농업인과 농가의 정의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경영주)의 등록 요건으로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함.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 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정의에 대하여 농업식품기본법상의 경작면적 기준과 농축산물판매액 기준에 추가하여 가축 평가액 기준을 규정함.
  - 경작면적 기준 : 조사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축산물 판매액 기준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축 평가액 기준 : 조사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2.2.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의 구분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주 여부, 농업시작 형태, 농업종사 형태 등으로 구분함.
  - ① 농업경영주 여부
    - 경영주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 ※ 공동경영주 :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 여부를 표시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농업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
  - ② 농업시작 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만 15세(법적 노동가능 나이) 이후 농업 이외 다른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과거에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2년 이상 연속)했거나 자영업 등 경제적 활동을 한 농업경영체
  - ③ 농업종사 형태
    - 전업 : 농업에만 종사하고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 겸업 : 농업 이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
  - ④ 후계농업인(경영주) 형태
    - 청년농업인 : 연령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 청년창업농 : 연령 만 40세 미만이고 영농경역이 3년 이내인 농업경영체
    - 후계농업인 : 연령 만 5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10년 이내인 농업경영체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가구원 중에서 농업종사자를 구분하고, 또한 가구원의 농업종사와 수입 비중에 근거하여 전업과 겸업 등으로 분류함.
  - ① 농가인구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일 현재 조사대상 농가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농업종사 가구원 : 조사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 ②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 전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 겸업농가 : 농업 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 : 농업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2.3. 경작자의 관내외 구분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경작자에 대하여 관내경작자, 관외경작자(전체 또는 부분) 등으로 구분함.
  - 관내경작자 : 농업경영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 관외경작자(전체) : 농업경영체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 전체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관외경작자(부분) : 농업경영체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 중 일부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농업총조사에 농가의 관내외 경작에 대한 구분 항목이 있음.

### 2.2.4. 영농 형태의 분류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경종, 축산, 복합경영 등의 3부문으로 분류함.
  - 경종 : 농지를 기반으로 경영·경작하고 축산·곤충을 생산·사육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 축산 : 가축 및 곤충을 부화·사육·생산하고 경종 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경

### 영체

- 복합 : 경종과 축산을 함께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축산물의 부류별 1년간 판매금액에 근거하여 주된 품목을 9개 부문으로 분류함.
  - 영농 형태 :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 2.2.5. 경지의 경작면적과 재배면적 구분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에 대하여 실제 경작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 등으로 구분함.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 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 농업총조사에서는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경작하지 않는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에서 제외하고 조사하지 않음.
  - 경지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작물 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으로 구분
  - 논 :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시설을 갖추고 물을 대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기로서 주로 논벼, 미나리,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경지
  - 밭 : 논 외 경지를 말하며 과수원 등 나무 심은 밭을 포함

- 경작하지 않은 경지 : 노동력 부족, 지력 증진을 위한 일시적인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논을 말함. 휴경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에서 제외되므로 조사하지 않음.

### 2.2.6. 농축산물생산 분야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축산물표준코드에 의거하여 작물 생산과 가축 사육의 규모 및 형태 등을 등록함.
  - 작물 생산 : 6개 부류(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수작물, 특약용작물 및 수목, 화훼 및 기타, 사료작물)의 등록품목(734품목)에 대한 경영체수, 재배면적
  - 가축 사육: 축산 25품목에 대한 경영체수, 사육두수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생산물 체계를 대분류(노지작물, 시설작물, 과수, 가축)와 중분류로 구분하고, 특히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식량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기타 노지작물,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등으로 분류함.
  - 작물 생산 : 84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경작형태, 보유형태, 시설현황 등
  - 가축 사육 : 가축 13개 품목에 대한 사육두수, 축사형태 등

### 2.2.7. 농업경영성과 분야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경영의 성과에 대하여 별도로 파악하지 않음.
  - 경영체등록 초기에는 농업소득 지표를 파악하였으나, 등록 자료의 신뢰성이 취약하여 농업인은 2019년부터 등록 항목에서 제외함.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산물 유통가공 및 농가소득·자산에 대하여 농업경영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함.
  - 농산물 유통·가공 : 판매구간별, 경영 형태, 주판매처, 생산자조직 등
  - 농가소득·자산 : 농업관련사업, 전업·겸업, 농기계 보유대수 등

&lt;표 3-22&gt;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용어 정의 및 설명

용어	정의 및 설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및 농업법인
농업인 (경영주)	농업인 경영체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벚꽃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li> <li>-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li> <li>- 곤충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li> </ul>
경영주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인 농업인과 함께 영농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li> <li>-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li> <li>-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li> </ul> 피고용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업시작 형태 전생애농업에 종사	만15세(법적 노동가능 나이) 이후 농업 이외 다른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2년 미만의 다른 직업 종사, 시간제 일자리, 학업기간, 무직 등은 경제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른 산업에서 전환	과거에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2년 이상 연속)했거나 자영업 등 경제적 활동을 한 농업경영체
농업종사 형태 전업	농업에만 종사하고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겸업	농업 이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 * 다른 농업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농산물 선별장·가공장·농업법인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노동력 대가 없이 제공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영농형태 경종	농지를 기반으로 경영·경작하고 축산·곤충을 생산·사육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축산	가축·곤충을 부화·사육·생산하고 경종 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복합	경종과 축산을 함께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작기를 반영한 재배면적이며 노지면적과 시설면적으로 구성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관외경작자	농업경영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농업경영체(특광역시외의 경우 행정구역상 “군·구” 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
관내경작자	농업경영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관외(전체)	농업경영체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 전체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관외(부분)	농업경영체가 경영·경작하는 농지·시설 소재지 중 일부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청년창업농	연령기준 만 40세 미만이고 영농경역이 3년 이내인 농업경영체
후계농업인	연령기준 만 5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10년 이내인 농업경영체
초기단계	후계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1~3년인 농업경영체
정착단계	후계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4~6년인 농업경영체
성장단계	후계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7~10년인 농업경영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감』.

&lt;표 3-23&gt; 2015년 농업총조사의 농가통계 용어 정의 및 설명

용어	정의 및 설명
농가	가주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경작면적 기준 : 2015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축산물 판매액 기준 : 지난 1년간(2014. 12. 1.~2015.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축 평가액 기준 : 2015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전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겸업	농업 수입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2종겸업	농업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농가
농가인구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15년 12월1일 현재 조사대상 농가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농업종사 가구원	2015년 12월 1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경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작물 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으로 구분
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시설을 갖추고 물을 대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기로서 주로 논벼, 미나리,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경지
밭	논 외 경지를 말하며 과수원 등 나무 심은 밭을 포함
경작하지 않은 경지	노동력 부족, 지력 증진을 위한 일시적인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논을 말함. 휴경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에서 제외
농업경영 형태	지난 1년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중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업 부문을 말함.
농업관련사업	농가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함.
직판장, 직거래	인터넷, 전화, 우편, 과수원, 원두막, 밭, 도로변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식당경영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일부 활용하여 음식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

농축산물 가공업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일부 활용하여 된장, 감식초, 딸기잼, 과일즙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
농기계 작업 대행	보유하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타인 경작지의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등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
농촌 관광 사업	주말농원, 민박경영 등 도시민들이 영농체험, 농촌생활 체험을 할 수 있게 농원을 조성하여 수입을 올리거나 민박경영을 하는 사업

자료: 통계청, 『2015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표 3-24> 2020년 농업총조사의 용어 정의 및 조사요령

용어	정의 및 조사요령
농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경작면적 기준 : 2020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축산물 판매액 기준 : 지난 1년간(2019. 12. 1.~2020.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축 평가액 기준 : 2020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2020년 12월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포함)
가구주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 (농업경영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농업종사 형태	
자기 농업에 종사	자기 농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를 말하며, 가구원이 경영주를 도와서 일한 경우와 노동력 교환 형식의 품앗이도 포함
남의 농업에 종사	다른 농가·농업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경우, 보유한 농기계로 작업대행을 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을 포함
기타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가로 조사
종사하지 않음	가사, 학생, 공익근무요원, 무직 등
경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작물 재배하는 모든 토지를 말하며 개간지, 하천부지, 간척지도 작물을 재배하면 경지에 포함. 자기소유, 남의

	소유(임차한 경지)와 관계없이 2020년 12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조사
- 논	물을 이용하여 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지
남의 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논과 국유지, 하천부지, 종중 논 등을 포함
이모작 논	지난 1년간 논벼를 수확한 후 보리, 마늘, 시설채소, 사료작물, 녹비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한 논
경작하지 않은 경지	노동력 부족, 지력 증진을 위한 일시적인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논을 말한다. 휴경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에서 제외
- 밭	일반 밭작물과 과수, 나무 등을 재배하는 경지 - 과수를 100㎡이상 집단 재배하는 과수원도 밭에 포함 - 산지를 개간하여 다년생의 유실수(밤, 호두 등), 약용작물, 관상작물, 산나물 등을 100㎡이상 집단 재배한 경우는 밭에 포함
남의 밭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쓴 밭과 국유지, 하천부지, 종중 밭 등
경작하지 않은 밭	노동력 부족, 지력 증진을 위한 일시적인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밭을 말한다. 휴경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에서 제외
농업경영 형태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업 경영 형태는 작물 재배업(노지와 시설) 과 축산업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조사 - 경영형태가 재배업이면 노지와 시설 중 하나에만 표시하고, 경영 형태가 과수이거나 축산인 농가는 과종과 축종의 세부 종류도 조사 - 판매 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농업형태를 조사
노지작물	식량작물: 논벼, 밭벼, 길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녹두 등 채소작물: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시금치, 상추, 호박, 양배추, 오이, 가지, 수박, 당근 특용작물: 인삼, 참깨, 들깨, 땅콩 화초작물: 카네이션, 국화, 수선화, 장미, 백합, 안개꽃 등 절화류 기타 작물: 사료작물(옥수수, 호밀, 청보리, 수단그라스 등), 기타 채소류(토마토— 딸기, 참외, 멜론 등), 기타 특용작물(담배, 유채, 삼, 모시, 왕골, 차, 수세미, 해바라기, 박하, 호프, 버섯류), 육모작물 산나물: 취나물, 도라지, 더덕, 도릅, 고사리, 참나물, 둥굴레, 원추리, 고비, 참죽, 열레지, 초피나무, 삼주, 죽순 등 약용작물: 오미자, 산수유, 산양삼, 헛개나무, 구기자, 오갈피, 당귀, 수액채취작물(고로쇠, 거제수), 구절초, 복령, 마, 석장포, 인동, 익모초,

	길경, 맥문동, 목단, 작약, 감초 등 관상작물: 조경수, 분재, 야생화(감국, 별개미취, 금낭화, 구절초, 제비 동자꽃, 비비추, 쑥부쟁이, 돌단풍, 원추리), 잔디, 자생란, 이끼류 등 표고버섯
시설작물	채소작물: 배추, 무, 고추, 시금치, 상추, 호박, 오이, 수박, 멜론, 토마토, 딸기, 참외, 파프리카, 서양채소(피망, 양상추, 브로콜리, 치커리 등) 화초작물: 카네이션, 국화, 수선화, 장미, 백합, 안개꽃 등 절화류 기타 작물: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버섯류(양송이, 느타리, 새송 이, 표고버섯), 기타 채소류( 대파 등)
과수	주요과수: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감귤 기타 과수: 자두, 매실, 살구, 블루베리, 참다래, 유자, 앵두, 무화과 등
가축	한우, 육우(젃소 수컷 포함), 젃소 암컷,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 토끼, 사슴, 개, 꿀벌, 기타 가축(거위, 칠면조, 관상조, 타조, 젃산 양), 기타 곤충(장수풍뎅이, 누에, 사슴벌레, 여치, 귀뚜라미, 지네 등)
시설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보온용 비닐하 우스나 유리온실, 육묘장, 버섯 재배사 등
시설면적	시설이 설치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 3,000㎡의 면적에서 배추를 1년간 2회 재배하였어도 시설 면적을 6,000㎡가 아닌 3,000㎡로 조사
자동화 시설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 등을 통 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시설
농업관련사업	농가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함
직판장, 직거래	인터넷, 전화, 우편, 과수원, 원두막, 밭, 도로변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는 사업
식당경영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해당 농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을 통해 음 식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
농축산물 가공업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된장, 감식초, 딸기잼, 과일즙 장아찌, 꽃감 등 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
농기계 작업 대행	보유하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타인 경작지의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등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
농촌 관광 사업	주말농원, 민박경영 등 도시민들이 영농체험, 농촌생활 체험을 할 수 있게 농원을 조성하여 수입을 올리거나 민박경영을 하는 사업 - 주말농원: 주말 영농 및 체험 영농을 위해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 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자료: 통계청, 『2020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

## 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가 통계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 4.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가 통계의 격차 확대

- 농업경영체 등록에 의한 농업인경영체 수와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가 수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임.<sup>10</sup>
  - 농업인경영체 수는 2015년 1,590천에서 2019년 1,686천으로 증가한 반면, 농가 수는 동기간 1,089천에서 1,007천으로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5년 50만 수준에서 2019년 68만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경영주 외 농업인과 경영주 외 종사자 수의 격차는 2015년 7만 수준에서 2019년 12만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표 3-25> 농업경영체와 농가 통계의 격차(2015~2019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9증감
농업인경영체 수(A)	1,589,795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96,273
농가 수(B)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81,360
A-B	501,277	550,080	602,882	637,789	678,910	177,633
경영주의 농업인(C)	993,120	927,171	820,998	783,339	760,500	△232,620
경영주의 종사자(D)	926,081	912,706	885,736	851,675	817,704	△108,377
C-D	67,039	14,465	△64,738	△68,336	△57,204	△124,243
농업인 수(E)	2,582,915	2,545,897	2,465,897	2,442,966	2,446,568	△136,347
농업종사자 수(F)	2,014,599	1,980,980	1,927,753	1,872,513	1,824,862	△189,767
E-F	568,316	564,917	538,144	570,453	621,706	53,390

주: 농업인경영체 및 농업인 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함.

농업인 수 = 개인경영체(경영주) 수 + 경영주 외 농업인 수.

농가와 농업종사자 수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및 농림어업조사(2016~19년)에 의함.

농업종사자 수 = 농가의 농업종사자가구원 수.

<sup>10</sup> 2016~'19년의 농가와 농업종사자 통계는 농림어업조사 결과이며, 2015년 전수조사인 총조사와는 달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추계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인인 수(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와 농가의 농업종사자 수(= 농업종사가구원)의 격차는 2015년 57만 수준에서 2019년 62만 수준으로 더욱 벌어지는 추세임.
- 총괄적으로 보면, 용어에는 차이가 있으나 농업경영주로 대표되는 농업인 경영체 수와 농가 수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업총조사로 파악된 농가 수는 감소하기 때문임.
  - 농업인경영체가 증가한 배경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림사업 지원과 연계됨으로써 기존의 농업경영주에 소속된 여성과 청년이 경영주로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경영을 분리하여 등록하고, 또한 관외에 거주하며 영농 활동하는 경작자 및 귀농·은퇴농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4.2. 농업경영주와 농가의 개념 및 성격의 차이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의 정의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주를 구분하고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정의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주를 구분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경영주로의 제도적 진입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에 의한 경영주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의사결정 주체로서 경영주 단위로 등록되기 때문에 경영주인 농업인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주가 됨.
  - 농업경영주는 엄밀하게 ‘농업인 경영주’를 말하며, 기존 농업경영주와 함께 영농하던 후계·청년농업인도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고, 부부관계인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음.
  - 여성경영주는 2015년 396천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24.9%였으나 2019년에는 466천명으로 늘어나 전체 경영주 대비 비율도 27.6%로 증가하였음. 특히 2016년에 도입한 공동경영주에는 여성이 89.1%로 대다수를 차지함.
  - 후계·청년경영주는 2015년 134천명으로 전체 경영주의 8.4%였으나 2019년

- 에는 151천명으로 늘어나 전체 경영주 대비 비율도 9.0%로 증가하였음.
- 특히 경영주의 이전 경력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바, 타산업에서 전환한 경영주가 2015년 397천명에서 2019년 799천명으로 40만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405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달함.

<표 3-26>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구성(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9증감
농업경영주	1,589,795	1,618,354	1,644,899	1,658,627	1,686,068	96,273
남	1,193,761	1,201,894	1,209,858	1,208,290	1,220,385	26,624
여	396,034 (24.9)	416,460 (25.7)	435,041 (26.4)	448,337 (27.0)	465,683 (27.6)	69,649
공동경영주	-	13,362	22,557	26,822	35,925	-
그중 여성	-	11,902	20,445	23,949	31,671	-
후계·청년농	134,108 (8.4)	141,962 (8.8)	144,135 (8.8)	151,036 (9.1)	151,306 (9.0)	17,198
후계농	89,560	95,494	96,146	99,276	97,634	8,074
청년농	37,406	37,480	37,830	39,334	40,192	2,786
청년창업농	7,142	8,988	10,159	12,426	13,570	6,428
타산업에서 전환 경영주	397,367 (25.0)	591,166 (36.5)	674,336 (41.0)	741,086 (44.7)	799,194 (47.4)	401,827
4050세대	-	-	340,983	360,811	369,251	-
4050&영농5년	-	-	85,169	94,862	100,828	-

주: 후계농은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이내, 청년창업농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

- 한편, 농업총조사의 농가 통계에서 파악되는 농업경영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업농가의 가구주가 해당됨. 따라서 농업경영주 수는 농가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영주의 성격에 대하여 성별, 취업형태, 연령, 영농경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농가 통계에 의한 농업경영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대략 18% 정도이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파악된 여성경영주의 비율과 10%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 많이 등록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경영주 연령을 보면, 농가 통계에서는 39세 이하 경영주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8% 내외의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경영주로 등록한 후계농업인이 많은 경향임.
  - 농가 통계의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경영주가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세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경영주 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3-27> 농가 통계의 농업경영주 구성(2015~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9증감
농가 수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81,360
주업농가	770,916 (70.8)	724,998 (67.9)	702,357 (67.4)	696,151 (68.2)	689,327 (68.4)	△81,699
농업경영주(남)	894,446	879,469	854,557	830,239	819,210	△75,236
(여)	194,072 (17.8)	188,804 (17.8)	187,461 (18.0)	190,599 (18.7)	187,939 (18.7)	△6,133
경영주 39세 이하	14,366 (1.32)	11,296 (1.06)	9,273 (0.89)	7,624 (0.75)	6,859 (0.68)	△7,507
65세 이상	582,005 (53.5)	592,670 (55.5)	606,643 (58.2)	615,789 (60.3)	624,180 (62.0)	42,175
영농경력 10년 미만	139,979 (12.9)	125,797 (11.8)	117,576 (11.3)	107,585 (10.5)	108,218 (10.7)	△31,761
20년 이상	794,036 (72.9)	802,059 (75.1)	783,835 (75.2)	772,134 (75.6)	753,432 (74.8)	△40,604

주: 주업은 전업+1종겸업, 부업은 2종겸업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농림어업조사(2016~2019년).

#### 4.3. 농업인과 농업종사자의 개념 및 종사 형태의 차이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을 정의하고 그 중에서 경영주와 경영주 외를 구분하는 반면에,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가구원 중에서 농업종사자를 구분하고, 특히 법률적 농업인 정의에 해당하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별도로 구분함.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에 비하여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가 수적으로 적게 조사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그 숫자를 직접 비교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경영주 외 농업인은 경영주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록된 가족원과 가족원 외로서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의 고용인으로 종사한 농업종사자로 구성됨.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합한 전체 농업인 수는 2015년 2,583천명에서 2019년 2,447천명으로 4년간 136천 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농업인력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동기간 여성농업인은 105천 명이 감소하여 남성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였음.
-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영주 수는 증가세이므로, 농업인력의 감소는 경영주외 농업인 수의 감소에서 비롯되며, 수치를 보면 2016년 927천명에서 2019년 761천명으로 3년 동안에 167천 명이 감소한 것임.
- 2019년 현재 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은 761천 명이고, 그 중 가족원은 760천 명(99.8%)으로 배우자 644(84.7), 부모 71(9.4), 자녀 36(4.8), 기타 8(1.1) 순이고, 고용인은 0.4천명(0.1%)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8>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구성(2015~2019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9증감
농업인 합계	2,582,915	2,545,897	2,465,897	2,442,966	2,446,568	△136,347
그 중 여성	1,224,379 (47.4)	1,195,309 (47.0)	1,140,299 (46.2)	1,122,712 (46.0)	1,119,590 (45.8)	△104,789
경영체당 농업인	1.63	1.57	1.50	1.47	1.45	△0.18
경영주외 농업인	-	927,171 (36.4)	820,998 (33.3)	784,339 (32.1)	760,500 (31.1)	△166,671
그 중 가족	-	924,851	818,999	782,581	758,758	△166,093

주: 농업인 합계 = 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외 농업인 증감은 2016/19년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

- 농가 통계에서는 가구원 중에서 농업종사인구를 구분하고 다시 90일 이상 종사자와 농업주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90일 이상 종사자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의 기준을 적용한 것임.
- 농업총조사의 농업종사인구는 가구원 중에서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므로, 농업경영체의 농업인(경영주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사람)보다 영농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sup>11</sup>따라서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 수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될 수 있음.
  - 농업종사인구는 2015년 2,015천 명에서 2019년 1,825천 명으로 190천 명이 감소했으며, 90일 이상 종사자로 보면 동기간 1,878천 명에서 1,651천 명으로 226천 명이 감소하였고, 농업주종사자를 보면 동기간 1,664천 명에서 1,453천 명으로 211천 명이 감소함으로써 전문인력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9>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의 구성(2015~2019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9증감
농업종사인구	2,014,599	1,980,980	1,927,753	1,872,513	1,824,862	△189,767
호당 종사자	1.85	1.85	1.85	1.83	1.81	△0.04
90일 이상 종사자	1,877,594	1,760,404	1,737,361	1,685,097	1,651,225	△226,369
농업주종사자	1,664,376	1,548,542	1,505,484	1,463,180	1,453,217	△211,159
그 중 여성	863,708 (51.9)	814,198 (52.6)	793,001 (52.7)	771,048 (52.7)	762,736 (52.5)	△100,972

주: 농업종사자는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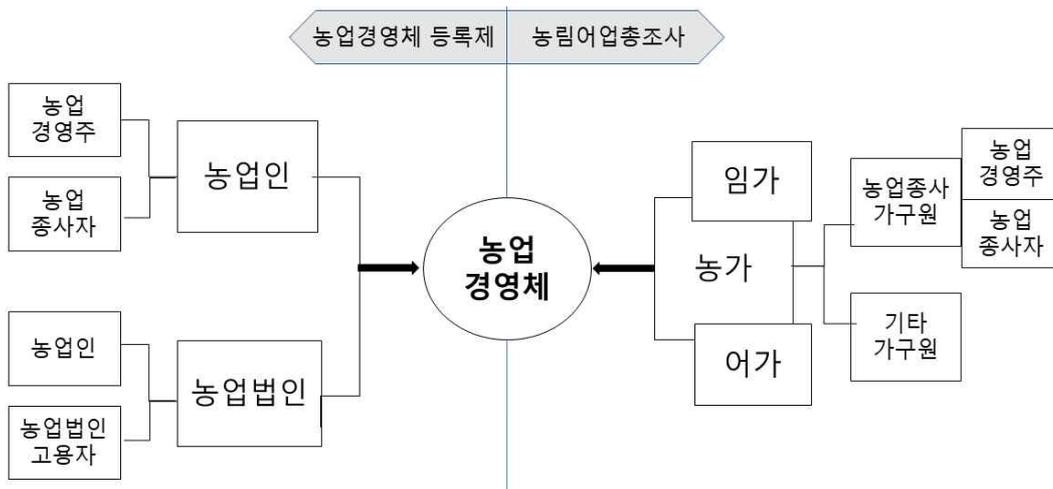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농림어업조사(2016~2019년).

11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에는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5.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상호 연관성 및 시사점

- 현행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서 농업경영체 및 인적 구성에 관한 용어 정의와 분류 체계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통계수치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근거하여 등록된 ‘농업인’(= 농업인경영체)과 농업총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농가’(= 농업경영 가구)에 대하여 그 개념과 인적 구성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농업경영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의 성격과 그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며,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성격과 그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임.

<그림 3-1> 농업경영체의 개념과 인적 구성



-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준별하고, 이어서 농업인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종사자)로 구

분함으로써 2단계로 농업경영체의 인적 구성을 파악하는 체계임.

-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식품기본법의 정의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바로 농업경영주를 지칭하며, 세부 기준으로 농작물 재배 기준, 가축 사육 기준, 곤충 사육 기준 등을 정하여 그 기준 이상으로 생산 또는 사육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농업경영주는 농업경영체 등록서식에 따라 엄밀하게 말하면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 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 또한,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공동경영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경영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임.
  -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서식에 따라 엄밀하게 말하면 ‘경영주 외 농업인’이며, 경영주인 농업인과 함께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인으로 준별함.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농림가와 어가를 각각 조사하며, 농가의 구성원 중에서 농업종사가구원과 기타 가구원을 준별하고, 이어 농업종사가구원은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로 구분함으로써 3단계로 농가(= 농업경영체)의 인적 구성을 파악하는 체계임.
- 농가는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며, 전국 모든 조사구 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대상 농가의 세부 기준으로 농림어업총조사규칙에 의거하여 경작면적 기준 또는 농축산물 판매액 기준 및 가축평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농가의 가구원(= 농가인구)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조사일 현재 조사대상 농가에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함.
  - 농가의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함.

- 농업경영주는 농가의 가구원 중에서 농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경영주’라는 용어로 준별함.
  - 농업종사자는 농업총조사지침에 따라 ‘농업종사 가구원’을 말하며, 조사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가족, 친인척, 동거인 등)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임.
-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대상인 농업경영체와 농가, 그리고 농업인과 농업종사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단위를 의미하므로 농업경영체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임.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서 농업경영체(농업인경영체 또는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의 성격이 통계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가 통계의 관계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주의 관계, 그리고 농업총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농업경영주의 관계를 준별하는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농업경영체 통계정보의 외국 사례

#### 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sup>12</sup>

##### 1.1. 농업경영체의 개념과 형태

- 독일에서 농장(Hof)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물적 기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농지와 농장가옥, 부속시설 및 농기계 등이 속함.
- 농장이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농업경영체의 창업에 요구되는 최소영농규모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와 농장상속법(Anerbenrecht)에 따라 농장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임.
- 농장상속법 「호프법(Höfeordnung)」에 의하면, ‘농장(Hof)’이란 농지나 임야 중에서 그 경제가치(Wirtschaftswert)가 1만 유로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농장가옥(Hofstelle)을 의미함(호프법 제1조 제1항).
- 토지와 농장가옥은 둘이 합쳐서 하나의 경영 단위, 즉 농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농장가옥을 갖지 못한 토지나 경지없는 농장가옥은 농장(Hof)이 될 수 없음.

<sup>12</sup> 이 절의 내용은 김수석 외(『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및 김정호(“주요국의 농업인·농업경영체 제도 및 정책 검토”(이슈페이퍼 4-3, 농림축산식품부, 2020)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 농업경영체(Landwirtschaftlicher Betrieb)는 농장이라는 물적 요소와 경영주 및 종사자를 의미하는 인적 요소가 결합된 사업체를 의미함.
  -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체임.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속하지 않음.
- 농업경영체의 법적 유형은 크게 ① 개인경영체, ② 인적회사, ③ 법인 등의 3개 형태로 분류됨.

### (1) 개인경영체

-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개인경영체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축산경영체는 축산업등록을 필해야 함.
  -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 규정을 적용받음.

### (2) 인적회사

-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회사를 인적회사로 분류하며, 따라서 인적회사에는 민법상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속함.
- 민법상회사(GbR)는 독일의 농업경영체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서 가장 단순한 조건의 민법 규정(독일민법 705-740조)을 적용받음.
  - 최소 2명의 자본금 출자자가 요구되나 최소액 규정이 없음.
  - 의결기관을 갖지 않고 구성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함.
  - 감독기관이 회사 내부관계를 규율해야 함.
  -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업실적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합명회사(OHG)는 구성원 모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민법상 회사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나,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법상 회사보다 좀 더 상업적 성격을 가짐.
  - 이익 배분은 출자자본에 대해 4%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성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따름.
-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는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한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 (3) 법인

- 법인은 구성원들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형태로서 법인격을 갖는 자본회사와 등록조합으로 구분되며, 자본회사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혼합형 회사 등이 있음.
-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등록부에 등록된 협동조합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지위임. 따라서 공식화된 협동조합은 모두 등록조합이라 볼 수 있고 법인에 속함.
  - 협동조합의 설립에는 최소 7명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하며, 최소 출자액은 요구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등록조합은 모든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도 등록조합에 포함됨.
  - 등록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경작지를 보유하고, 특히 동독지역의 농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법인 형태임.
  - 등록조합 형태의 농업경영체는 현재 동독지역 농경지의 절반 정도를 경작할 정도로 중요한 법인조직임.

#### (4) 영농조합(Agrar Genossenschaft)

- 협동조합법에 의거한 농업경영체인 등록조합은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농업생산조합이란 용어가 구동독 체제의 집단농장에 대한 명칭(Landwirtschaftliche Produktivgenossenschaft, LPG)과 혼동되기 때문에, 이 생산협동조합을 영농조합(Agrar Genossenschaft)이라고 명명하고 있음.
  - 영농조합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일반화되지 않았으나, 통일 이후 구동독의 집단농장이 해체되면서 다른 조직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동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체임.
- 영농조합의 법적·제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은 법적으로 등록조합인 법인임.
  -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임. 따라서 심사협회에 가입하여 경영실적을 심사받아야 함.
  - 영농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인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됨.<sup>13</sup>

## 1.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세계 집행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조세법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의 농업경영체 개념임.

<sup>13</sup> 농업경영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심사협회에 가입하면, 그 경영체는 라이파이젠협회(DRV)의 영농조합 중 하나로 파악되고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협회인 독일협동조합 및 라이파이젠협회(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DGRV)의 회원이 됨.

- 조세법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마친 농업경영체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지원법의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로 등록하는 절차가 이루어짐. 그러나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고 있음.

### 1.2.1. 조세법의 농업경영체 등록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사업체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무만 있지만, 최소영농규모를 초과하는 주업농 및 부업농은 해당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을 말함.
  - 산재보험은 최소영농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인 취미농이나 소규모 사업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최소영농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사업체들만 가입하게 함.
-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은 ①창업 후 사업자로 신고하는 사항, ②농장의 가

- 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한 사업체에게는 조세번호가 교부됨.
  - 세무서는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농장의 통합가치를 확정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또는 이윤을 산출하거나 농지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부기 기장의 의무를 갖게 됨.
- 부기기장 대상은 ①농림업의 매출이 연간 50만 유로가 넘거나, ②농림업의 이윤이 연간 5만 유로가 넘을 때, ③또는 농지의 경영가치(임차지 포함)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임.
  - 부기기장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세무서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기장 의무를 통지함.
- 농업회의소가 있는 주에서는 창업농이 「농업회의소법」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회원 자격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농업회의소의 회원 중 토지소유자들은 농업회의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농장의 통합가치가 되고, 회비의 징수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함.
- 축산업을 하는 양축자는 수의검역보험에 가입하고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함.
- 수의검역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가축은 말, 소, 돼지, 양, 염소와 가금류 등이 해당되며, 여기서 보험가입은 가축이 양축자의 소유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 어느 규모로 사육하는지, 가축사육이 토지경작과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등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짐.
-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축은 「가축거래령」에 따라 수의검역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함.

- 등록 내용은 양축자의 이름과 주소, 축종별 연평균 사육두수, 가축의 용도, 축사 위치 등임.
- 관할 관청인 수의검역소는 축산업등록정보를 받아 중앙등록시스템에 전달하고, 중앙등록시스템은 축산업등록번호를 발부하여 이를 수의검역소와 등록신청자에게 전달함.
  - 가축 등록은 개체별로 등록하는 소와, 사육두수를 등록하고 축산업등록표를 부착하게 하는 말, 돼지, 양, 염소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사료의 생산 및 가공·유통에 관계하는 사업체(사료사업체)는 EU의 「사료위생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함.
  - 사료사업체는 사료의 생산, 가공, 저장 또는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체 모두를 말하는데,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를 생산·가공 또는 저장하는 사업체도 포함됨.
- 사료사업체 등록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사료사업체는 EU 규정에 의거한 사료위생지침을 준수해야 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한 경우에 농업경영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농업경영체는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세를 면제받고, 유류세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음.
  - 또한 농업경영체가 주업농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억제영역인 자유공간에 농업용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해당하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 중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속하지 않는 경영체는 ① 법인경영체(= 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 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이 갖는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음.
  -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에 대해 특별공제로 우대함.
  - 조세법상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됨.
  - 농지 및 임야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농지 및 농장가옥의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로 부과함.
  - 농림업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농장 통합가치로 산정함.
  - 농산물의 부가가치세는 일반 부가가치세율 19%보다 낮은 세율 10.7%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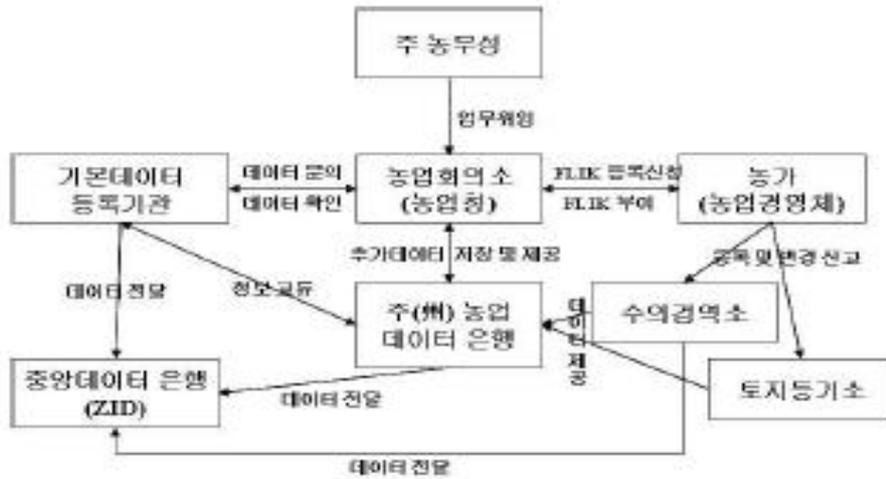
### 1.2.2. 지원법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자격요건이 됨.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EU의 공동농업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국내에서 자국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정책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것임.
- 독일이 국내 농업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주된 프로그램은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공동임무(GAK)인데, 이 GAK에서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투자지원사업(AFP)임.

- 농업경영체가 농업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의 경영성과 경영주의 직업적 능력이 증빙되어야 함.
  - 농업경영주의 직업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개의 영농직업교육 수료가 요구됨.
  - 농업투자지원사업(AFP) 등 국내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추가적인 전제조건이지 별도의 등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EU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EU 규정에 의거한 통합행정통제시스템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경영체가 IACS에 등록하는 것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함.
  - 독일은 EU 규정에 따른 단일직불제 실시 및 IACS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04년 12월부터 독일식 IACS 시스템인 InVeKoS를 운영하고 있음.
  -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것임. 다시 말해 농업경영체의 인력 현황과 농지를 이용한 영농활동 내역을 등록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농업경영체의 농지정보는 필지별로 ‘토지식별번호(FLIK)’를 부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음.
  -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nVeKoS 관리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InVeKoS는 경종농업경영체뿐 아니라 축산경영체를 포함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축산경영체에 대한 등록은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를 InVeKoS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하는 축산업등록제를 InVeKoS가 활용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농업행정은 각 주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도 주별로 관리되고 있음.
- 등록 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장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InVeKoS 관리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임.

<그림 4-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체계(InVeKoS)



#### 1.4.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

- 농업경영체의 인적사항에 관한 등록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체 주소 : 경영체 이름, 경영주 이름, 경영체의 법적 형태,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 등록 사유 :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조기양도,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전체농장 양도, 농장의 분할, 경영체 창설
- 등록 내용 :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을 통합하여 통합경영체로 등록할 경우에 신규 등록에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함.

- 등록 시기 :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
  - 영농 유형 : 축산을 포함한 농업, 축산 없는 농업, 취미농업, 도축업, 가축유통업, 정책프로그램 대상 농업
  - 축산 등록 : 가축(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사육두수와 수의위생단위
- 농지 정보는 이른바 '토지식별번호(Flächenidentifikator, FLIK)'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FLIK는 경지대장(Flurbuch) 상의 최소 단위인 필지(Flurstuck) 중에서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부여하는 일종의 지번에 해당함.
  - FLIK는 6자리의 문자와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 문자는 2자리의 국가코드(DE)와 2자리의 주(州) 코드, 그리고 농업 IACS를 의미하는 LI로 되어 있고, 10자리 숫자는 주별로 재량에 따라 임의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별로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항목은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게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ACS를 관할하는 관청(농업회의소 또는 농업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Katasteramt)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루어짐.
- FLIK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경작하는 필지 각각을 한꺼번에 기재하는데, 필지별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지가 위치한 게마인데 및 토지행정상의 구역
  - 경지대장 상의 필지 번호
  - 해당 필지의 면적
  - 해당 필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면적
  - 토지의 이용(작목) 현황

- 토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 농업경영체 등록 사유에서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등록에는 축산의 경우에만 기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 농장분할에 의한 등록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경영체에 대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원 경영체는 기존의 등록번호를 유지함.
  -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농업경영체가 신고하여 이를 갱신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구성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2>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	7	6												
[국가번호]	[주번호]	[군번호]	[계마인데 번호]	[경영체 번호]										

### 1.3.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현황

- 2016년 농업경영체 수는 27만 5,400개소인데, 이 중 개인경영체(농가)가 24만 4,200개소로 전체의 88.7%를 차지함.
  - 인적회사는 25,700개소, 법인은 5,500개소이며, 전체 농업경영체에 대한 비중은 각각 9.3%와 2%를 차지함.
  - 농지 점유율은 개인경영체가 64.1%, 인적회사 18.6%, 법인 17.3%로서 인적회사와 법인의 비중이 전체 경지의 35%에 달함.
  - 2010년과 2016년의 농업경영체 수의 변동을 보면, 개인경영체(농가)의 비율이 91.3%에서 88.7%로 감소한 반면, 인적회사는 7.0%에서 9.3%로, 법인은 1.7%에서 2.0%로 증가를 보였음.

- 독일 전체로 농업경영체의 평균 경지면적은 2016년 현재 개인경영체 43.7ha, 인적회사 120.3ha, 법인 526.8ha로 조사되었음.
-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농업경영 형태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구동독의 집단농장 체제가 해체되었으나 농업경영은 생산협동조합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임.
  - 서독지역은 전형적인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이며, 이 지역에서 인적회사와 법인을 합한 농업경영체의 비율이 약 10%, 보유경작지 비율이 약 18%에 불과하며, 특히 자본회사인 법인은 1% 이하의 미미한 수준임.
  - 동독지역은 대규모의 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적으로 15%를 차지하는 법인경영체가 동독지역의 경지 50% 이상을 경작하고 있음.

&lt;표 4-1&gt; 독일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구성

단위: 천 개소, 천ha, %

연도별 경영체별	2010년		2016년	
	경영체 수 (비율)	농지면적 (비율)	경영체 수 (비율)	농지면적 (비율)
개인경영체 (농가)	273.0 (91.3)	11,084.7 (66.4)	244.2 (88.7)	10,682.4 (64.1)
인적회사	21.0 (7.0)	2,664.1 (15.9)	25.7 (9.3)	3,091.3 (18.6)
법인	5.1 (1.7)	2,955.2 (17.7)	5.5 (2.0)	2,885.3 (17.3)
합계	299.1 (100)	16,704.0 (100)	275.4 (100)	16,659.0 (100)

자료: BMEL(2019), Agrarpolitis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19.

&lt;표 4-2&gt;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농업경영체 형태 비교(2016년)

단위: %, ha

경영체 지역별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경영체 비율	경작지 비율	평균 경지면적
서독지역	90.4	82.3	40.5	8.9	16.7	83.4	0.7	1.0	64.2
동독지역	71.5	27.5	86.2	13.6	22.3	365.9	14.9	50.2	754.8

자료: BMEL(2019), Agrarpolitis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19.

## 2. 일본의 농가 통계<sup>14</sup>

### 2.1. 농가의 통계적 정의와 기준

- 일본의 농가 통계는 농업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농가에 대한 통계조사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47년 8월에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임시농업센서스임.
  - 당시 농업센서스의 조사대상은 모든 농가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기준으로 논벼를 재배하는 자는 면적의 대소에 불구하고 모두 농가로 간주하였음. 또한 밭작물만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상시 판매하는 자는 모두 농가로 간주하며, 상시 판매가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노동력을 쓰는 경우에는 모두 농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 1950년 2월에 FAO의 권고에 의하여 공식적인 농업센서스가 실시되었으며, 이 농업센서스에서 농가의 정의와 함께 최저규모 기준이 규정되었음.
  - 농가의 정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경지면적에 농업을 경영하는 세대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세대”로 규정하였음.
  - 농업센서스 조사대상은 경종을 행하는 농가로서 경영경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정하였는데, 일본 전역을 A와 B 지역으로 나누어 A지역(주로 동일본)에서는 1단보 이상 그리고 B지역(주로 서일본)에서는 0.5단보 이상으로 하고, 상업적 농작물(24종)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금액이 1만 엔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음.<sup>15</sup>
  - 이 때 설정된 농가의 경영경지 하한규모 10a 기준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액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현실에

14 이 절의 내용은 김정호(“주요국의 농업인·농업경영체 제도 및 정책 검토”(이슈페이퍼 4-3, 농림축산식품부, 2020)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15 일본을 동서로 크게 지역을 구분하는데, 동일본은 北海道, 東北·關東 지역을, 서일본은 關西·九州 지역을 말함.

맞게 상향 조정하여 왔음. 예를 들어 1960년 센서스에서는 2만 엔 이상, 1965년 센서스에서는 3만 엔 이상, 1970년 센서스에서는 연간 판매액을 5만 엔 이상, 1975년 센서스에서는 7만 엔 이상, 1980년 센서스에서는 10만 엔 이상 등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표 4-3> 일본 농업센서스의 농가 분류와 기준

농가 분류	자격 기준
농가	경영경지면적 10a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세대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5만엔 이상인 세대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50만엔 이상인 농가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며, 연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
준주업농가	농외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미만)이며, 연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
부업적농가	연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없는 농가(주업농가 및 준주업농가 이외의 농가)
전업농가	세대원 중에 겸업종사자(연간 30일 이상 농업 외에 고용되어 종사한 자 또는 농업 이외의 자영업에 종사한 자)가 1인도 없는 농가
겸업농가	세대원 중에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있는 농가
제1종겸업농가	농업소득이 겸업소득보다 많은 겸업농가
제2종겸업농가	겸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겸업농가
자급적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 미만이고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50만엔 미만인 농가
농가 이외 사업체	경영경지면적이 10a 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5만엔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세대(농가) 이외의 사업체
농업서비스사업체	위탁을 받아 농작업을 행하는 사업소(농업사업체를 제외하고, 스스로 종묘 생산 및 판매를 행하는 사업소를 포함)
토지소유 비농가	농가 이외의 경지 및 경작방목지를 5a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에서 정리.

- 농업센서스의 농가 기준이 대폭 수정된 것은 1990년 조사이며, 이 때 개정된 농가 기준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1990년 센서스에서는 경지면적 하한으로 일본 전역에 10a 기준을 적용하였고, 농산물 판매액 기준도 연간 15만 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또한 이 때부터 상업농 체제를 반영하여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즉, 판매농가는 경지면적이 30a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만 엔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자급적 농가는 경지면적 10~30a이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만 엔 미만인 농가로 규정하였음.
- 한편, 농가와 함께 사용된 용어로 1950년대까지는 농가 이외의 사업체를 ‘준농가(準農家)’로 명칭하였는데, 1960년 센서스 이후에는 준농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농가 이외의 사업체’로 분류하고 있음.
  - ‘농가 이외의 사업체’란 주로 농업법인의 형태로서 협업경영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회사 등이 있으며, 그밖에 농협, 기타 농업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사업체를 말함.

## 2.2. 농업경영체 동향 및 인정농업자 현황

- 일본의 농가 통계는 5년마다 농업센서스를 통해 발표하며, 센서스 실시 이외의 해에는 농업구조(농업생산구조, 취업구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농업구조동태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 농업센서스는 전수조사인 반면에, 농업구조동태조사는 표본조사로서 도도부현 조사치를 토대로 모집단을 추정하여 집계함.
  - 최근 농업구조동태조사(2019년 2월 1일 현재)에 의하면,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는 118만 9천 개소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음. 이 중에서 가족경영체 수는 115만 3천 개소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7% 감소했고, 조직경영체 수는 총 3만 6천개소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인데, 농업취업인구는 2010년 261만 명에서 2018년 175만 명으로 연평균 4% 수준으로 감소했고,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도 205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3.6%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기간적 농업종사자의 2018년 평균 연령이 66.6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4> 농업경영체 조직형태별 추이(2015~2019년)

단위: 천 개소

연도	농업 경영체 ①+②	가족 경영체 ①	조직 경영체 ②	농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2015	1,377.3	1,344.3	33.0	18.9
2016	1,318.4	1,284.4	34.0	20.8
2017	1,258.0	1,223.1	34.9	21.8
2018	1,220.5	1,185.0	35.5	22.7
2019	1,188.8	1,152.8	36.0	23.4
증감률(2019/18)	△ 2.6	△ 2.7	1.4	3.1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농업구조동태조사. 2015년 수치는 농림업센서스 결과.

<표 4-5> 일본의 농업종사자 추이(2010~2018년)

단위: 명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농업취업인구	260.6	209.7	192.2	181.6	175.3
그 중 여성	130.0	100.9	90.0	84.9	80.8
그 중 65세 이상	160.5	133.1	125.4	120.7	120.0
평균 연령	65.8	66.4	66.8	66.7	66.8
기간적 농업종사자	205.1	175.4	158.6	150.7	145.1
그 중 여성	90.3	74.9	65.6	61.9	58.6
그 중 65세 이상	125.3	113.2	103.1	100.1	98.7
평균 연령	66.1	67.0	66.8	66.6	66.6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에서 정리.

- 인정농업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시정촌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는 제도이며, 공동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센서스의 농업경영체(= 농가 + 농업법인)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농업센서스에서는 인정농업자를 보유한 농업경영체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 농업센서스에서 인정농업자 보유 농업경영체 수는 총 21만 3,921 개소로 그 중 가족경영체는 20만 2,660개, 조직경영체는 1만 1,261개로 조사되었음.

-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인정농업자 수는 24만 665개이며, 그 중 법인 수는 2만 3,648개로 집계되었음.

※ 2018년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가 145만 명이므로, 그 중 16% 정도가 인정농업자로 등록한 셈임.

- 최근 조사(2018년 3월)에서 가족경영체에 속한 인정농업자의 연령계층별 및 영농유형별 분포를 보면, 연령계층별로는 65~69세가 가장 많으며, 영농유형별로는 수도작경영이 가장 많음.

<표 4-6> 일본의 인정농업자 내역별 추이(2014~2018년)

구 분	2010	2015	2016	2017	2018
①계획 만료 예정자	35,560	38,600	54,321	57,319	37,263
②재인정 예정자	26,826	30,498	44,918	46,048	29,420
③재인정 미예정자	8,734	8,102	9,403	11,271	7,843
④계획기간중 자격 상실	1,808	2,125	2,644	2,794	2,369
⑤신규 예정자	8,257	17,569	19,689	10,284	8,573
순 증감 (⑤-(③+④))	△2,285	7,342	7,642	△3,781	△1,639
재인정률 (②/①)	75.4%	79.0%	82.7%	80.3%	79.0%
인정농업자 수	231,101	238,443	246,085	242,304	240,665

주: 인정농업자 수는 매년 3월 기준 수치.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에서 정리.

### 2.3. 인정농업자 지원정책 개요

○ 인정농업자는 의욕있는 농업자로서 정부의 경영개선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임.

- 농업자가 작성하는 농업경영규모 확대, 생산방식·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작업의 개선 등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농업경영개선계획=5년 후의 경영목표)을 지자체(=市町村)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인정하고 정책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인정 대상>

- 연령·성별: 인정에 대해 연령 제한은 없으며, 여성농업자도 인정 대상
- 전겸업별: 비농가나 제2종겸업농가라도 금후 농업을 주력으로 해 나갈 사람이면 인정의 대상
- 경영 규모: 현재 경영규모가 작더라도 고수익 농업경영의 실현이 가능
- 영농 유형: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중소가축경영 등도 인정 대상
- 조직 형태: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인정 대상, 농외로부터 진입 기업도 인정 대상

○ 인정농업자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인정 기준: 시정촌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 농업경영개선계획이 시정촌의 ‘기본구상’에 적합할 것
- 계획이 농용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적합할 것
- 계획 달성에 대한 전망이 확실할 것

<市町村 기본구상>

지역의 바람직한 농업경영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

- 영농유형별 경영규모, 생산방식, 경영관리 방법, 농업종사 형태 등
- 연간 농업소득 목표: 주종사자 1인당 대략 350만엔~600만엔 정도로, 시정촌별로 지역의 타산업종사자 소득을 참고하여 설정
- 연간 노동시간 목표: 대략 1,800~2,000시간 정도

② 인정 절차

- 인정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정촌에 “농업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 농업경영개선계획서에 기재하는 내용
  - 경영규모 확대에 관한 목표(재배면적, 사육두수, 작업수탁면적 등)
  - 생산방식 합리화 목표(기계·시설의 도입, 포장 합배미, 신기술 도입 등)
  - 경영관리 합리화 목표(복식부기 기장 등)
  - 농업종사 형태 개선 목표 (휴일제 도입 등)

③ 인정농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 경영규모 확대의 지원

- 농기계·시설 임차료 등의 보조
- 제도자금 및 이자 지원
- 세제상의 혜택 및 기타 지원 등

<표 4-7> 일본의 인정농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구분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 내용
경영 소득 안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 지원</li> <li>• 쌀 및 밭작물의 수입 감소 영향 완화 대책</li> <li>- 지원대상: 인정농업자, 집락영농, 인정신규취농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대두 등의 생산비 보전</li> <li>• 쌀·밀·대두 등의 수입 감소에 대한 안전망</li> </ul>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지원</li> <li>- 지원대상: 인정농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개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농지, 시설기계 등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장기운전자금)</li> <li>• 사람·농지플랜의 중심 경영체인 인정농업가 차입하는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에 대해 5년간 이자 부담 경감</li> </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금 제도</li> <li>- 지원대상: 사람·농지플랜의 중심 경영체청색신고 대상인 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소득안정 대책의 교부금을 적립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li> <li>• 5년 이내에 적립금을 해체하여 농지나 농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압축기장 가능</li> </ul>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li> <li>- 지원대상: 사람·농지플랜의 중심 경영체, 농지중간관리기구로부터 임대차 설정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를 활용하여 농업용기계 등을 도입할 때, 융자 잔액에 대한 국고 보조</li> </ul>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그리비즈니스 투자육성주식회사 및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에 의한 출자 지원</li> <li>- 지원대상: 인정농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법인투자원활화법」에 의거, 투자주체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음.</li> </ul>
농업자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자연금의 보험료 지원</li> <li>- 지원대상: 39세까지 가입, 농업소득 900만원 이하의 청색신고 대상 인정농업자 및 인정신규취농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액 2만엔 보험료 중 1만엔~4천엔/월 국고 보조(최대 20년)</li> </ul>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에서 정리.

###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주요 선진국들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능한 한 많은 농업인을 정책에 포함하면서도 지원정책은 대상별로 선택적 적용 방식(Optional Support Policy)을 택하고 있다는 것임.
  - EU의 신공동농업정책(new CAP)은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 수단을 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적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농정’(=맞춤형 농정)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고 있음.
  - 독일과 영국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책의 수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통 지원과 특별 지원으로 정책 수단을 차별 적용하고, 일본은 일정 조건을 갖춘 인정농업자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도 맞춤형 농정이 정책 수혜자인 농업경영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재정 측면에서 정착시켜야 할 미래지향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맞춤형 농정은 농업 문제의 핵심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며, 기존의 평준화된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임.
  - 맞춤형 농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지원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된 바탕 위에 선택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농정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경영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임.
  
-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의 개선 검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식품기본법에서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로 준별하여 규정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경영체(= 농업인 세대)와 농업법인경영체(농업법인, 협동조합)로 구분해야 함.

- 농업인의 자격 기준인 농산물판매액 기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농업총조사와 연계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신청주의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정보의 등록·갱신은 물론 매년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장려해야 함.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농정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도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8> 주요국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제도의 검토사항

구분	현행	개선 검토사항
농업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 농지 경작 1,000㎡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농업종사: 연간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농업법인 고용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 하한 기준의 상향 조정</li> <li>※주요국들도 하한 기준 유지</li> <li>•영농종사자 포함 여부</li> <li>※주요국들은 농가/농장 단위로 규정</li> <li>⇒다수의 농업인을 정책 대상에 포함</li> </ul>
농업경영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 농업인 + 농업법인</li> <li>-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li> <li>※농지 없는 경영체는 등록 불가능</li> <li>※농업종사자도 농업인(=농업경영체)이라는 모순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농산물생산이 주업인 경영체로 한정하는 방안</li> <li>※주요국들은 농산물생산업에 한정, 유통사업체는 제외</li> <li>•농업법인에 협동조합형 포함</li> <li>⇒농업생산이 주업인 경영체(농업인경영체, 농업법인경영체)로 규정 필요</li> </ul>
농업경영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 등록제</li> <li>- 자율등록(신청주의)</li> <li>-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li> <li>※영국의 농가 등록제,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의무, 임의)</li> <li>⇒경영체 등록제를 신청주의 유지</li> </ul>
선택적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li> <li>-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상향식 지원시스템</li> <li>•공익직불제 실시</li> <li>- 소농직불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적 지원 방식의 농정 체계</li> <li>※독일의 세법상 농업경영체 의무등록</li> <li>※일본의 인정농업자 제도</li> <li>⇒맞춤형 농정시스템 유지</li> <li>⇒선택형 지원정책 프로그램 확충</li> </ul>

## 제 5 장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각계 의견

#### 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선행연구 주요내용

##### 1.1.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선행연구

- 최근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김한호 외(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방안, 2015), 한석호 외(농업경영체 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2017), 이태호(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농업정책, 2020) 등이 있음.
- 김한호 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유형별 특성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2015년)
  - 이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이용하여 유효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 농가 유형화모델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통계청 농업총조사 자료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농가 DB 구축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농업총조사와 비교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불일치 농가는 전업화 지수가 낮은 농가, 판매액이 낮은 농가, 경지면적이

- 작은 농가,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 전문화 지수가 높은 농가, 도시지역(서울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는 농가 등임.
- 농업총조사의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등록의 농가 수가 다르게 조사된 주된 이유의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중복 등록일 가능성이 있음. 농업총조사에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한 농가로 취급하여 조사한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개별적·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면 다른 농가로 구분하기 때문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의 개선방안으로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의 신뢰성 제고, 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련 교육 강화, ③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사실 확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리를 통해 정책 기초자료로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들 간의 연계방법과 자료항목 일치성을 제고하고, 핵심변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의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정책대상에서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도 전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농업총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여러 항목을 공통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상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통계청 등의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015년 이후에 농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어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시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시등록제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입력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각 방식이 가진 장점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석호 외, 『농업경영체 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2017년)
  -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DB 운영실적 및 운영성과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DB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농업경영체 DB의 활용사례를 이용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함. 즉, ① 각종 정책 집행 이행을 위한 수혜대상 설정 및 범위 선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농업인 자격 증명 확인용’, ② 농업경영체 DB 분석을 통해 자료 생성, 농업경영체별 맞춤 정책 홍보 및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자료를 활용한 ‘분석자료 활용 및 정책지원 정보 제공’, ③ 정책수립을 위해 기초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활용한 ‘농업정책수립(사전적) 등임.
  - 중앙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국고 보조 융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분석자료로의 활용을 통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DB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하여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예산(216억 2,100만원)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체 DB의 편익을 분석한 결과, 농업경영체 DB 활용에 따른 직접편익은 약 1,425억 119만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인 B/C 비율은 6.59로 추산되었음.
  - 또한 농업경영체 DB 이용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편익으로, 농업경영체 DB 원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내 농업경영체 DB의 가치(이용 및 교환가치의 총합)는 이용가치(UV) 약 1,035억 원 및 교환가치(EV) 약 316억 원으로서 총 가치는 약 1,351억 원으로 분석되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투입예산 대비 6.2배로 나타났음.
  - 농업경영체 DB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을 지적하였음. 즉, ① 농업경영체 DB의 복잡한 획득 절차와 낮은 적시성, ②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제한된 접근 권한, ③ 농업경영체 DB 항목

중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은 측면,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의 제공자료의 다양성 부족, 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임.

- 농업경영체 DB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용 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② 농업경영체 DB 오류검증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한 정확도 제고, ③ DB에 대한 접근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④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이태호,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농업정책”(세미나 자료, 2018년)

- 이 논문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미시적 정보, 모집단 정보, 패널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농업경영체 자료의 빅데이터적 특성으로, ① 양(volume): 농업경영체의 숫자는 약 170만 개에 달하여 이를 전수 조사할 경우 얻어지는 정보의 양은 양적인 면에서 방대함. ② 속도(velocity): 기존의 농업총조사 결과는 5년 주기로 3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조사는 매년 발표됨. ③ 다양성(variety): 같은 경영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조사 자료(DB파일, 문자, 이메일, 공문서, 동영상 등)와 연계 가능함. ④ 변동성(variability): 농업경영체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는 계절, 농산물 수급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큼. ⑤ 복잡성(complexity): 한 농업경영체가 여러 가지 작물을 복합적으로 재배하고 다양한 농지와 농업인력 등의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정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함.
- 농업경영체 등록조사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은 빅데이터(=농업경영체 모집단의 미시적 농업경영 패널 자료를 종합하는 새로운 정형(structure))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정책은 크게 세 부문의 정책 전환을 가능하게 함. 즉, 첫째, 평균적 대농 중심 정책에서 다양한 농가형태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 가능하고, 둘째, 쌀 농업 중심정책에서 밭 농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 가능하고, 셋째, 농촌관련 DB정보 통합 및 연계로 농업중심 정책에서 농촌 중심 정책으로 전환 가능함.

## 1.2. 농업총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 최근에 농업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업경영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김정호 외(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2003), 박민선(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2007), 김경덕 외(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2012) 등이 있음.
- 김정호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년)
  - 이 연구에서는 1990년, 1995년,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5년 단위로 10년 동안의 농업구조 변화에 대하여 농가의 가족 구조, 노동력 구조, 토지이용 구조, 농업생산경영 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특히 농가의 인력구조분석을 통해 가족생애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가족 구성의 측면에서 농가의 존속 문제가 심각한 것을 지적하였음.
  - 연구와 관련하여 농업총조사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는데, 먼저, 조사 항목을 개선하여 농업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즉, 현재 논에 대하여 임차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나 밭을 포함하여 농지임대차 면적을 추가하도록 하며,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농업종사 일수를 현행 3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을 1, 2, 3, 4, 5개월까지 세분할 필요가 있음. 영농 형태의 분류에서 현재와 같이 농업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작목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나, 주 작목 수입이 50% 미만인 경우

에는 복합경영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총조사 조사 체계의 개선도 지적하였음. 농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업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총조사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가 단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농가 경영주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계속 농가(경영승계 포함)인지 신규농가인지 여부를 조사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농가의 진출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박민선,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농협경제연구 제37권』, 2003년)

- 이 논문에서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의 분화에 대해 자급적 영세농과 기업적 농가로 분화되는 양상을 경작규모와 판매규모를 중심으로 규명하였음. 특히 농가 분화는 영농형태의 분화와도 밀접히 관련을 가지며 일반 밭작물과 미작, 채소 경작농가에 영세농이 많고 축산, 과수, 화훼와 같은 작물에는 대규모 농가가 많은 경향으로 농가 분화가 생산의 집중화를 수반하여 진행됨을 밝혔음.

○ 김경덕 외, 『농업 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에 관점을 두고 농업구조와 농가 형태, 농가인구와 경영구조, 농업 생산구조, 농업생산성 변화 등을 분석하였음. 특히 농가의 생산 및 경영구조의 특성으로 전문화, 다각화, 양극화 등의 추세를 분석하고, 귀농·귀촌의 급격한 증가 및 40~50대 장년층 인구의 순수입 등을 특징으로 분석하였음.
- 농업총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농업생산과 경영구조 변화의 전망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 2.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1.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 조사 목적
  - 농업구조·경영 분야의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업총조사 통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국내의 농업구조 및 농업경영 분야 연구자 총 40명
    - ※ 최근 10년간 농업구조 또는 농업경영 관련 연구실적(연구논문, 연구보고서)이 있는 연구자를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정
    - ※ 전국 20개 대학 농업경제학전공 교수 25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 15명
  - 조사 기간 : 2010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이메일 조사
  
- 조사 내용 : 부록 의견조사표 참조
  - 일반사항 : 3문항
  -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 8문항
  - 농업총조사에 관한 사항 : 8문항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에 대한 사항 : 11문항
  
- 집계 및 분석 방법
  - 항목별 빈도 분석
  - 기타 제언사항 정리

## 2.2. 조사 결과

### 2.2.1. 응답자 분포

- 의견조사의 응답자는 총 34명으로 연구직이 14명, 교수직이 20명임.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 38%, 50대 41%, 60대 21% 등임.
  - 연구경력별 분포는 10년 미만 9%, 10~19년 38%, 20~29년 35%, 30년 이상 6명 등임.

<표 5-1> 응답자의 직종 분포

단위: 명, %

	합계	연구직	교수직
직종	34	14	20
비율	100.0	41.2	58.8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표 5-2> 응답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합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	34	0	13	14	7
비율	100.0	0	38.2	41.2	20.6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표 5-3> 응답자의 연구경력 분포

단위: 명, %

	합계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경력	34	3	13	12	6
비율	100.0	8.8	38.2	35.3	17.7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2.2.2.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인지 수준을 문의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6.5%,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6%, 잘 몰랐다는 응답이 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4>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합계	잘 알고 있음	대충 알고 있음	잘 몰랐음
빈도	34	26	7	1
비율	100.0	76.5	20.6	2.9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73.5%, 없다는 응답이 26.5%로 조사되었음.

<표 5-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

단위: 명, %

	합계	있음	없음
빈도	34	25	9
비율	100%	73.5	26.5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자료 DB 40.7%, 분석자료집 33.4%, 연감 14.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단위: 명, %

	합계	분석자료집	연감	원자료 DB	기타
빈도	27	9	4	11	3
비율	100.0	33.4	14.8	40.7	11.1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7.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연구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9%, 일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2.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되었음.

<표 5-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연구 목적에 도움 수준

단위: 명, %

	합계	많은 도움	일부 도움	별로 도움 안됨
빈도	26	14	11	1
비율	100.0	53.9	42.3	3.8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8.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심 항목에 대해서는 인적 정보 44.4%, 농지 정보 26.8%, 경종농업 정보 24.4%, 축산업 정보 2.2%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심 항목

단위: 명, %

	합계	인적정보	농지정보	경종농업정보	축산업정보	기타
빈도	45	20	12	11	1	1
비율	100.0	44.4	26.8	24.4	2.2	2.2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2문항 선택, 68중 결측값 23.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 복잡 46.2%, 특별한 이유 없음 30.8%, 필요성 없음 23.0%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합계	필요성 없음	절차 복잡	이유없음
빈도	13	3	6	4
비율	100%	23.0	46.2	30.8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성 제고 51.3%, 정보 정확성 제고 28.2%, 타기관과 정보 연계 15.3%, 홍보 강화 2.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1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단위: 명, %

	합계	홍보 강화	접근성 제고	정확성 제고	타기관 연계	기타
빈도	39	1	20	11	6	1
비율	100.0	2.6	51.3	28.2	15.3	2.6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표 5-11>과 같이 정보 홍보, 정보 접근성, 정보 정확성, 정보화 방법, 경영체 등록 체계, 추가 또는 삭제 희망 조사항목 등으로 정리하였음.

<표 5-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개선 희망 사항

구분	전문가 의견
정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 정보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한 연구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극히 제한적임.</li> </ul>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털사이트 구성과 접근성은 좋으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원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이 중요함.</li> <li>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보업데이트가 매년 갱신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인에게 접근성을 높이면서 연구 및 정책에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 등록정보 활용도를 높이면서 접근성도 높여야 함.</li> <li>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문제로 양질의 정보를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데이터3법에서도 완화되었고, 블록체인의 기술로 암호화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li> <li>농업경영체의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경영체가 보유한 세부정보와 농업 부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가 연계분석될 수 있도록 기대함.</li> </ul>
정보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등 관리가 필요함. 농식품부 정책대상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정확성이 높아져야 될 것임.</li> <li>농업경영체 등록 당시 기재한 정보와 실제 영농활동의 불일치 문제가</li> </ul>

	있어 추가적인 정보수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정보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업경영체DB 원자료를 얻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됨. 통계청MDIS 방식으로 원자료(개인정보 삭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li> <li>• 개별경영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일관적인 동태적 패널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ul>
경영체 등록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등록 방식을 개선할 필요. 직불금 등을 수령하려면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므로 다수가 가입하지만, 자료생성 과정에 한계가 있음. 또한 정기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함에도 임의등록방식 때문에 현행화가 매우 늦어짐. 현재 농가수와 농업경영체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자료 삭제 및 현행화가 늦은 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li> <li>• 농업경영체 분할등록(일명 ‘농가쪼개기’)를 방지할 수단이 필요. 농업인은 지원을 보다 많이 받으려고 이러한 편법을 쓸 유인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생성과 불법수령을 방지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임.</li> </ul>
등록항목 추가/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은 직접비용을 제외한 개념이며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하게 농업조수입으로 개선 필요</li> <li>• 다양한 작목 및 가축에 대한 정보를 매번 업데이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은 점차 DB화할 필요</li> </ul>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2.2.3. 농업총조사에 관한 사항

- 농업총조사에 대한 인지 수준을 문의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91.2%,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이 8.2% 순으로 조사되어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앞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인지도와 비교하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15%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표 5-12> 농업총조사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합계	잘 알고 있음	대충 아는 수준	잘 몰랐음
빈도	34	31	3	0
비율	100.0	91.2	8.2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97%로 거의 대부분이 활용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13>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

단위: 명, %

	합계	있음	없음
빈도	34	33	1
비율	100.0	97.0	3.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통계포털 67.7%, 원자료 DB 23.5%, 간행물 5.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14>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단위: 명, %

	합계	간행물	통계포털	원자료 DB	기타
빈도	34	2	23	8	1
비율	100%	5.9	67.7	23.5	2.9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가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 75.8%, 일부 도움 24.2%로 조사되었음.

<표 5-15>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연구 목적에 도움 수준

단위: 명, %

	합계	많은 도움	일부 도움	별로 도움 안됨
빈도	33	25	8	0
비율	100.0	75.8	24.2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1.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관심 항목에 대해서는 인적 정보 43.5%, 농지 정보 22.6%, 경종농업 정보 27.4%, 축산업 정보 6.5% 등으로 조사되었음.

&lt;표 5-16&gt;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관심 사항

단위: 명, %

	합계	인적정보	농지정보	경종농업정보	축산업정보
빈도	62	27	14	17	4
비율	100.0	43.5	22.6	27.4	6.5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명뿐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었음.

&lt;표 5-17&gt;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합계	필요성 없음	절차 복잡	이유 없음
빈도	3	2	0	1
비율	100.0	67.7	0.0	32.3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에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타기관과 정보 연계 35.6%, 정보 접근성 제고 29.0%, 정보 정확성 제고 29.0%, 홍보 강화 3.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lt;표 5-18&gt;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단위: 명, %

	합계	홍보화	접근성 제고	정확성 제고	타기관 연계	기타
빈도	31	1	9	9	11	1
비율	100%	3.2	29.0	29.0	35.6	3.2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3.

-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표 5-19>과 같이 정보 홍보, 정보 접근성, 정보 정확성, 정보화 방법, 경영체 등록 체계, 추가 또는 삭제 희망 조사항목 등으로 정리하였음.

&lt;표 5-19&gt;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개선 희망 사항

구분	전문가 의견
정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농업총조사의 목적과 정보제공 내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li> </ul>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총조사도 원시데이터 공유가 용이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금년에 데이터3법에서도 완화되었고, 블록체인기술로 암호화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정보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문항이 과도하게 상세한 경우 또는 상세해야 하는데 상세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전반적으로 조사내용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문항을 개편해야 함.</li> <li>• 농업총조사는 농업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li> </ul>
정보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일련번호(ID)가 일치하지 않아 5년 단위 농가의 변화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추진되는 샘플조사는 자료 활용도를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됨.</li> </ul>
조사 체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므로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자료의 신선도가 떨어짐. 따라서 항목을 줄이고 조사주기와 공표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음.</li> <li>• 5년 단위 농업총조사와 매년 실시되는 농업조사 간의 차이가 너무 큼. 특히 연령별 농업경영주, 가족농업종사자, 고용인력의 농업조사 실태에 대한 정교한 조사 필요(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li> <li>•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매출액 역시 구간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사특성상 불가피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하는 다른 조사(예:농가경제조사)와 연동할 수 없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ul>
조사항목 추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내 가구원의 결합형태 정보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 혈연관계, 기업 등 경영형태에 대한 정보가 유용함.</li> <li>• 경영주 학력, 농업에 관한 사항 중 모내기준비기 물관리, 논벼성장기 물관리, 논벼벗짚처리 등은 중요사항이 아님.</li> </ul>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2.2.4.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에 관한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업인(경영주) 신청과 등록 체계 및 농업총조사의 농가(가구주) 대상 조사 체계와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

답이 69.7%, 현행 유지 24.4%로 조사되었음.

<표 5-20>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조사체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현행대로	개선 필요	잘 모름
빈도	33	8	23	2
비율	100.0	24.2	69.7	6.1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1.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공통 지표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보면 농업경영주 구성(가구주, 후계자, 공동경영주), 농가/경영체 형태(전업 또는 겸업), 농업경영 규모(경작면적, 농산물판매액, 가축사육두수 등), 농업종사자 구성(농업종사자 수, 전업 또는 겸업), 농업경영 형태(논벼, 채소, 과수, 특작, 한우, 낙농, 한돈, 양계, 기타 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5-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공통지표 개발 분야

단위: 명, %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농가 형태	12	7	3	2
비율	100.0	58.3	25.0	16.7
경영주 구성	19	14	4	1
비율	100.0	73.6	21.1	5.3
종사자 구성	21	6	6	9
비율	100.0	28.6	28.6	42.8
경영 규모	28	6	14	8
비율	100.0	21.4	50.0	28.6
경영 형태	18	1	6	11
비율	100.0	5.6	33.3	61.1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현행 농업인과 농가의 자격 기준인 경지 면적 1000㎡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 유지 81.8%, 확대 15.2%, 축소 3.0%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5-22> 농업인과 농가의 기준인 경지 1000㎡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현행 유지	확대	축소
빈도	33	27	5	1
비율	100.0	81.8	15.2	3.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1.

- 현행 농업인과 농가의 자격 기준인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 유지 56.2%, 확대 43.8%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5-23> 농업인과 농가의 기준인 농산물판매액 120만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현행 유지	확대	축소
빈도	32	18	14	0
비율	100.0	56.2	43.8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2.

- 농가의 경영주와 후계자가 각각 별개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실제로 경영 참여시 가능 55.9%, 반대 26.5%, 적극 권장 17.6%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5-24> 경영주와 후계자가 별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적극 권장	실제 참여시 가능	반대
빈도	34	6	19	9
비율	100.0	17.6	55.9	26.5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 참여시

가능 64.7%, 적극 권장 29.4%, 반대 5.9%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5-25>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적극 권장	실제 참여시 가능	반대
빈도	34	10	22	2
비율	100.0	29.4	64.7	5.9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농업인의 자율등록으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의 내용(양과 질)에 대한 의견으로 미흡할 것이라는 응답이 82.4%,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는 응답이 14.7%로 조사되었음. 미흡할 것이라는 이유로 미등록이나 정보 누락을 지적하였음.

<표 5-26>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 내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충분히 제공	미흡	모름
빈도	34	5	28	1
비율	100.0	14.7	82.4	2.9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원의 면접조사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의 내용(양과 질)에 대한 의견으로는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는 응답이 63.6%, 미흡할 것이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되었음.

<표 5-27> 농업총조사에서 수집된 농업경영정보 내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합계	충분히 제공	미흡	모름
빈도	33	21	12	0
비율	100%	63.6	36.4	0

자료 : 본 연구 조사결과. 결측값 1.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가 연구에 잘 활용되기 위하여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응답은 <표 5-28>과 같이 기본방향, 협력 내용, 협력 방법, 추진 체제, 조사 통합 등으로 정리하였음.

<표 5-28>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원자료 공유, 두 조사간 중복사항은 줄이고 통계간 연계를 위한 노력 필요</li> <li>• 목적이 다른 만큼 보완형태의 협조방안과 두 정보와 연계로 인해 보다 충실한 정보제공이 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li> </ul>
협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목적이 서로 달라 조사내용은 다르겠지만, 용어와 대상을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두 기관의 자료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 필요</li> <li>•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치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사대상자의 정보공유가 필요. 중복항목을 최소화하며, 5년 단위 농림어업총조사의 간극 4년치 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주요조사항목에 한해 어느 정도 대신하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함.</li> <li>• 두 데이터 베이스 간의 정보 정확성을 농업총조사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li> </ul>
협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조사가 연동될 수 있도록 공통부분을 기초로 구체적인 항목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li> <li>• 농업총조사를 조사할 때도 중복되는 항목은 농업경영체DB 자료로 대체하고, 농업경영체등록DB에서 조사되지 않은 항목 위주로 농업총조사에서 조사하면 설문항목도 풍부해지고, 두 통계자료의 결과도 일관성이 있을 것임.</li> </ul>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과 농식품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통신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li> <li>• 두 기관의 자료공유 및 필요시 공동조사 및 정기적인 미팅, 실무자간 교류 등</li> </ul>
통계 정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총조사를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으나, 원시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 통계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음.</li> <li>• 단기적으로는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밝혀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관련 통계정보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li> </ul>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 3. 각계 의견의 시사점

- 선행연구의 연구자들과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지적된 공통적인 사항은 농업 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가 농업인 또는 농가의 농업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하고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만큼 충분한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두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관점이 강조되어 자율등록의 한계, 상시관리 및 현행화의 한계, DB 활용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음.
  - 자율등록에 따른 신고 누락 문제 : 농업인의 자율등록 시스템 하에서는 신고를 회피하는 농업경영체의 정보 누락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영체 등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성 : 신고한 농업경영체 정보의 신뢰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서, 등록 정보의 사실 확인과 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임.
  - 상시관리 및 현행화의 한계 : 농업경영체의 초기 등록 단계에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가 갱신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기관의 실사를 통한 정보 현행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DB 구축과 활용의 한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인지도가 낮고 연구 활용이 저조한 편임. 특히 포털사이트 구성과 접근성은 좋으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원자료 이용이 곤요하며, 따라서 농업경영체 DB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농업부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가 연계분석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음으로, 농업총조사에 대해서는 특히 5년 주기 조사에 따른 시의성과 정확성이 강조되어 조사 결과의 공표, 조사 내용의 정밀성, 연간 표본조사와의 연계, 통계포털의 이용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조사 결과의 시의성 : 농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므로, 통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자료의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공표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임.
  -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 조사원에 의한 조사 방식이므로 농가의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조사 문항이 너무 상세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조사 과정에서 응답이 소홀해질 우려를 지적하였음.
  - 연간 표본조사와의 연계 문제 : 5년 단위 농업총조사와 매년 실시되는 농업조사 간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서 연계 분석이 어려우며, 연간 표본조사에서도 농업경영인력에 대해서는 정교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DB 활용의 한계 :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의 일련번호(ID)가 일치하지 않아 5년 단위 농가의 경영구조 변화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는 여러 항목을 공통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상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두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기본 방향 : 두 조사의 목적이 다른 만큼 상호보완하는 형태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농업총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협력 내용 : 조사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용어와 조사항목을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특히 농업총조사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조사항목을 인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협력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가 조사자료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록 연결코드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특히 농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므로 중간의 4년치 농업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DB 자료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계열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추진 체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호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절충해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통계정보 연계 : 단기적으로는 두 기관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밝혀 문제점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 농업관련 통계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임. 또한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법적으로 농업통계의 지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제 6 장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및 상호협력 방안

#### 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개선 사항

##### 1.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등록정보의 개선 사항

###### 1.1.1. 농업경영체의 개념과 용어의 재정립

###### (1)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업인경영체’ 개념 도입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서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거하여 농지 경작자와 농산물 판매자 그리고 농업종사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중에서 법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농업인(예: 농업법인 고용자)이 존재함.
-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의 대상으로 농업인은 ‘농업인경영체’로, 농업법인은 ‘농업법인경영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농업인경영체’(= 농업경영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총조사의 ‘농가’와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농업경영주의 가구 단위로서 경영주의 가족(부부,

후계자 등)을 모두 포괄하므로, 농업인경영체보다 광의의 개념임.

(2)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의 용어 재정립

-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에서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자’를 ‘농업종사자’보다 상위 또는 별개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음.
-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는 농업인을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주가 아닌 농업종사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가 되고 있음.
- ※ 농식품부는 2019년(2019.2.8.)에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를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
- 한편, 농업총조사에서 농업경영주는 “농가의 가구원 중에서 농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농업종사자는 ‘농업종사 가구원’을 말함.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농업인경영체(= 농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적·통계적으로 공통된 용어가 될 수 있음.
- 특히 농업경영주는 엄밀하게 농업이 생업(生業)이고 주업인 사람이며, 부업농이나 취미농의 경영주와는 구별되어야 함.
- ※ 주업의 기준으로 농업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또는 농업종사일수가 총근로일수의 5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3) 농업경영의 개념에 위탁경영을 배제

- 현행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작업 부분위탁을 제외하고는 위탁경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농지법 제9조 6호),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농지법 제2조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 ‘농업경영’의 정의를 추가하고 위탁경영

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에 엄격히 적용되도록 함.

#### (4) 농업인 기준의 상향 조정

- 농업인 기준 설정의 기본방향은 가능한 한 많은 농업인이 농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한 기준을 설정하되, 정책 지원은 농업인의 유형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임.
  - 따라서 농업인 기준의 농지 경작면적 1,000㎡는 유지하되, 농산물 판매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현행보다 다소 상향된 150만 원, 농업종사일수는 축산업종사자 기준과 동일하게 120일을 적용하도록 조정해야 함.
- ※ 농산물판매액 기준 : 1999년 100만 원 → 2008년 120만 원

### 1.1.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등록 항목의 조정

#### (1) 농업경영체 등록의 주체

- 법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독립적인 농업경영 단위를 의미하므로,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전체를 농업경영체 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불합리함.
-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따라서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경영주 + 종사자) 개념이 아니라 농업인경영체(= 경영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즉, 독립적인 농업경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농업경영주와 후계자가 농업인경영체로 등록하고, 그 가족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속한 ‘농업종사자’로 등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2) 농업경영체 등록의 대상에 대한 규정 명시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에 근거하는 농업인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제3호 농업인은 제1,2호의 경영주에 속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4,5호 농업인(유통사업법인 고용자)은 농업

경영체에 해당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추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명시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체의 자율등록에 따른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체 등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부부공동경영주 제도의 명확화

- 농업경영주와 부부관계인 여성농업인은 영농보조자가 아니라 농업경영의 의사결정자로 역할하는 만큼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에 공동경영주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 (4) 협동조합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경영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임.
- ※ 예: 식물공장(스마트팜), 농지임차형 협동조합농장 등
- 따라서 농업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5) 농업인과 임업인·어업인의 중복 등록 문제

- 임업인에 대해서는 2019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018. 2. 21.)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산림정책에서 ‘임업인’을 규정하고, 수산정책에서 ‘어업인’을 규정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정책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주에 대해서도 주업 개념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1.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의 개선

####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통계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자정부법과 통계법에서 행정자료 접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농업경영체법에서 그 활용 목적에 통계이용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았고, 조사항목이 서식 형태로 되어 있어 행정자료를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sup>16</sup>
- 통계개발원 연구결과(2009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그 이유는, 행정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법적 기반 취약, 행정자료의 연계코드 미흡으로 통계생산에 한계, 농업통계와 관련된 주요 행정기관간의 협조 미흡 등임.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하여 자료집과 연감으로 공표하여 농업정책 연구 및 지방농정 추진에 활용하고 있음.
  - ※ 분석자료집 :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을 분기별 1편씩 발간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2020년부터 발간 폐지
  - ※ 연감 : 일부 항목을 집계한 자료집(2015~'16년) 형태에서 등록정보 전반을 집계한 제표 형식의 연감을 2017년부터 발간
-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책적·학술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정보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상시 관리와 현행화

- 농업경영체의 초기 등록 단계에서는 경영정보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

<sup>16</sup> 이에 대해서는 김한호 외(『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유형별 특성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2015년)에서도 지적하였음.

할 수 있으나, 그 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갱신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기관의 실사를 통한 정보 현행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사실 확인(농어업경영체법 제5조)과 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총조사 농가 수보다 농업인경영체 수가 많은 요인 중 하나로 과거 자료 존치 및 현행화 지연 등이 지적됨.

### (3) 농업경영체 DB의 활용도 제고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구조 분석, 농업인력 전망, 지역농업계획 수립 등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이제는 일반에게 접근성을 높이면서 연구 및 정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농업경영체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오류검증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한 정확도 제고, DB에 대한 접근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함.

### (4) 농업경영체 관련정보의 연계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지원부의 농업인력이나 농지이용 상황은 농정의 기초자료이므로 농업인의 경영정보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주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대비 가능할 것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가 연계되어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유용한 통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지표를 개발하는 등 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1.2. 농가 통계 및 농업총조사 조사지침의 개선 사항

### 1.2.1. 농가 통계 용어의 재정립

#### (1) 농가와 농업인의 통계적 연계

- 농업총조사의 ‘농가’ 개념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착된 용어이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농업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농업경영주의 가구 단위로서 경영주의 가족(부부, 후계자 등)을 모두 포괄하므로, 농업인경영체보다 광의의 개념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파악되는 농업인(경영주) 수가 농업총조사의 농가 수보다 구조적으로 많이 파악되는 것임.
- 따라서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구성원에 대한 농업종사 형태를 세분류함으로써 통계 이용자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세대주 + 후계자) 형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임.

#### (2) 농업경영주와 농업종사자의 관계 재정립

- 농업총조사에서 농업종사자는 ‘농업종사 가구원’을 말하며, 조사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가족, 친인척, 동거인 등)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임.
- 또한 농업경영주는 농가의 농업종사 가구원 중에서 농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구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종사자 중에서 농업경영주가 규정되므로,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업인(=경영주 + 경영주 외)보다 수적으로 적게 조사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업인은 경영주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사람임.
- 따라서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가구주와 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의 성

격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의 개정이 필요함.

## 1.2.2. 농업총조사 조사지침의 조정

### (1) 농업의 범위 확장

-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에서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총조사지침서에도 농업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 부문에 한정하고 있음.
- 최근에 영농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서도 농업인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임. 예를 들어 천적 사육, 발효미생물 생산 등도 농업생산의 중요한 분야임.
- 따라서 농업총조사에서도 농업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과 연계한 유통·가공사업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법률 정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 ※ 「수산업법」에서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양식, 염전사업 등)과 수산업(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별도로 규정
  - ※ 「임업진흥법」에서 임업을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으로 규정

### (2) 농업인과 임업인·어업인의 주업(主業) 개념 도입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농가, 임가, 어가를 동시에 조사하므로 조사대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충분히 파악하는 동시에 각각 판매액 기준으로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여 농림어업의 경영 형태를 준별할 수 있음.
  - ※ 농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시가 총액 12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임가 :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최근 1년간 임

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 어가 :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시가 총액 12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 따라서 농가 통계에 주업 개념(= 농업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또는 농업종사일수가 총근로일수의 50% 이상)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맞춤형 농정의 추진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3) 조사 문항의 수준에 대한 일관성 조정

- 농업총조사의 조사 문항 중에 너무 상세한 내용(예: 농가의 생산자조직 참여, 벼농사 물관리 형태 등)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조사 과정에서 응답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조사대상 농가가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의 전반에 대하여 응답 내용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추가 또는 삭제 조사항목 검토

- 추가 희망 항목 : 영농후계자 관련사항(경영승계와 창업 구분), 농지 및 사육시설 소재지, 친환경농업 인증 현황 등
- 삭제 희망 항목 : 경영주 교육 수준, 농업에 관한 사항 중 논벼 물관리 항목 등은 중요사항이 아님. 생산자조직 참여 문항은 축소 검토.

## 1.2.3. 농업총조사의 농가 통계 활용의 개선

### (1) 국가통계포털의 이용 편의

- 농가의 기본구조는 시계열을 유지하여 분석이 가능하나, 농축산물 변화에 대한 항목은 일부 중단분석이 어려움.
- 농업총조사의 분류지표(농가, 농가인구, 농업종사가구원, 작물, 가축)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5년 단위 농업총조사와 중간년도에 매년 발표되는 농업조사 간에 차이가 있어서 연계 분석이 어려우므로 조사체계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의성 있는 동향통계는 연간 표본조사가 적합함.

## (2) 농업총조사 DB 활용의 원활화

- 농업총조사 DB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접근 및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함.
- 농업총조사 원자료DB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의 일련번호(ID)가 일치하지 않아 농가경영구조의 시계열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 농업총조사 원시자료의 공유가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도 완화되었고, 블록체인기술로 암호화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의 연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가 연계되어 유용한 통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특히 농업총조사의 중간년도에 매년 표본조사하는 농업조사에 대해서는 농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연계 발전 방안

### 2.1.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연계 방안

#### (1) 기본 방향의 공유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간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의거하여 농정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되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한다는 것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농가와 농업인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유용한 통계정보임.
- 그러나 농업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되고 있어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시차의 문제가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의 자율등록에 의존하므로 정보입력의 정확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방식이 가진 장점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함.
- 농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므로 중간의 4년치 농업조사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DB를 활용하여 시계열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2) 정책 용어와 통계 용어의 연관성 및 공통지표 개발

- 농업총조사의 조사대상 농가는 가구 단위로서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과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므로, 두 조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위 분류지표에 유사항목을 찾아 공통지표를 개발해야 함.
- ※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사용되는 농업경영주 성격(승계/창업, 타산업 전환 여부) 및 후계농업인 성격(후계농/청년농, 승계/창업)이 공통지표로 유용할 것임.

#### (3) 2020년 농업총조사 집계표에 공통지표 적용

- 금년에 2020년 농업총조사가 완료되므로 집계 공표의 과정에서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록 통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는 세대주 개념으로 농업경영주의 성격을 구분하여 농가 통계의 농업경영주와 비교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가 통계의 농업종사자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세부 내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임.

#### (4) 농업경영구조 분석 등 공동연구 추진

- 최근 통계청에서 1970년부터 2019년까지 농가의 모습을 시계열로 분석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2020.11.17)를 발표하였는데,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임.

※ 다만, 2019년은 농업총조사 결과가 아니므로 시계열 연속성에는 한계.

- 농업총조사의 정책적인 수요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통계청과의 업무협조가 긴요하며, 통계청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경영 측면에서는 개황 수준이므로 농가통계와 연계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기 위한 농업경영구조 분석 등의 공동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 2.2.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1)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정보 통합관리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목적과 업무영역 등을 분석하여, 각 제도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업무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농관원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시·구·읍·면장이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관련 경영정보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법적 위상 제고

- 농업총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여러 항목을 공통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법적으로 농업통계의 지위를 갖추고, 농업총조사의 농가 통계와 서로 연계되어 정책적·학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임.

(3) 농업통계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력체계 확립

- 농업통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비롯하여 행정 기관의 협조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의 포괄 범위, 조사 항목의 완결성과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등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농업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와 현장의 농업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농업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과의 상호협력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부록 1 : 농어업경영체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 등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이의 신청)**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이하 제3장~제8장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하 제5조~제2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8.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4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 정보
5. 삭제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립가 선정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 정보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

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다목·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

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

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하 제5조~제2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접수일			※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90일

###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농업인 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신규등록사유	[ ]분리 [ ]귀농 [ ]상속 [ ]기타( )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농업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는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 또는 ×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급지(80g/㎡)]

(6쪽 중 제2쪽)

###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보조금 신청

번호	④-1 지목		④-2 농지면적(㎡) A≥B+C+D				④-3 시설 현황		④-4 품목별 재배면적		④-5 필지 삭제 사유	④-6 농지 소유자	⑤ ( ) 보조금 신청							
	농지 소재지	공부 실제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노지 (㎡)	시설 (㎡)	⑤-1 신청 사업명	⑤-2 재배 품목	⑤-3 신청 면적 (㎡)	⑤-4 농지 이용현황 (○,×)	⑤-5 신청인 성명	⑤-6 신청 지역 여부 (○,×)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인 초지는 ④-1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급지(80g/㎡)]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육산·곤충 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

㉔ 사육시설 현황								㉔-3 사육정보	
㉔-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종)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㉔-2 실제	자영	임차 기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 x 210mm [ 탁상지(80g/㎡) 또는 중립지(80g/㎡)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교육인력포털시스템(egredit),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무수후계 농업경영인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세이프(SAFE-Q) 정보시스템, 식품행위종합시스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솔토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행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통별 배정에 관한 정보	
환경영향농산물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행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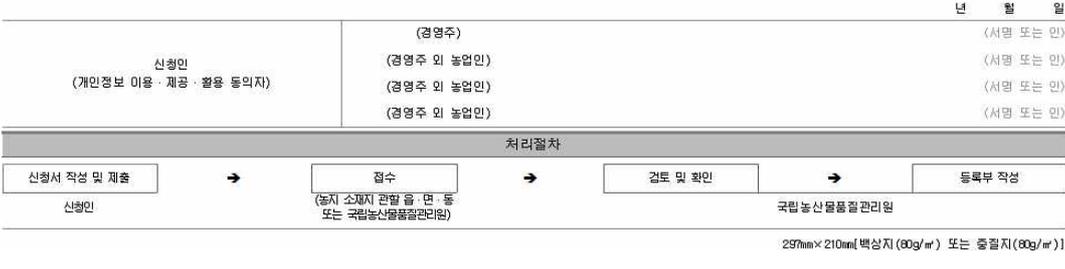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297mm x 210mm [ 탁상지(80g/㎡) 또는 중립지(80g/㎡) ]

(6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등의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 정보의 등록·변경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등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1. 일반현황·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 신규등록 사유에는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및 기타)를 작성합니다.
  -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반경등록)인정할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계승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반경등록)인정할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제5항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 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 경영주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2. 농지 등 농작물 재배 / 보조금 신청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①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①-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초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경관보전적목적농지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초지(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조간불리지면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함)에 한해 작성합니다.
  - ①-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지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지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휴경면적 ≠ 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침몰 등의 경우,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도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 ①-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반초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경질판), ⑤ 육묘장(비닐), ⑥ 재배시설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①-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농지인 경우 농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 ①-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식재 시 식재 일자와 식재 사유를 작성합니다.
    - \* 필지 식재 사유 구분: 매대(종·매대·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식재), 임차종료(임차농지 식재),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 ②란은 등록종류 등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3. 가족·곤충 사육시설 및 사유규토: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①란은 가족·곤충 등 사유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가족·곤충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인 아닌 경우 가족·곤충 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 표시를 합니다.)
  - ①-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①-2란은 실제 사유시설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족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유시설 면적 또는 부화율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①-3란은 사용하고 있는 가족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할 현재의 사유규토(㎡/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법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0. 8. 26.>

[ ]농업 [ ]등록확인서  
 [ ]어업 [ ]증명서                      신청서  
 [ ]어업 [ ]등록말소확인서

\* 귀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 알리 [ ]에 √표시를 합니다. (일괄)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		법인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인과 관계
	생년월일		신청인 연락처
발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통	1. 경영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력	[ ]표시
		2.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 ]표시
		3.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삭제 필지 표시 / [ ]전체 미표시
		4. 임야 및 임업경영	[ ]삭제 필지 표시 / [ ]전체 미표시
		5.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용규모	[ ]삭제 필지 표시 / [ ]전체 미표시
		6. 정부보조·융자금 등 수령정보	[ ]표시
		7.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 ]표시
		8.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표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통	1. 경영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력	[ ]표시
		2. 경영주인 어업인 및 경영주 외 어업인 변경이력	[ ]표시
3. 정부보조·융자금 등 수령정보		[ ]표시	
4. 교육 이수 및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현황		[ ]표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 ]통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 ]통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 ]통	
용도 및 목적	제출기관	[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농업협동조합 [ ] 기타( )	
	제출용도	예시) 유의 사항란 4번 참조	
신청인 신분 증명 자료	[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 ] 위원장, [ ] 기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제3조의2제3항, 제4조의3제5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 ]농업경영체 [ ]등록확인서 [ ]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어업경영체 [ ]등록말소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장·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주목)

#### 유의 사항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신청내용의 각 항목에 "표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제출용도는 사용용도를 파악하여 향후 서류제출 감소와 추진 등을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서 발급목적은 정확히 작성합니다.

예) 농업인(조합원) 자격증명, 보조금 신청, 세금감면, 법인설립 또는 개인보관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0. 8. 25.>

(양쪽)

<b>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b>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성명		생년월일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포함 [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미포함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 ], 미포함 [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	농지 등 면적(㎡)				등록정보 있음
		공부	실제경작	추경	폐경	
6. 임야 및 임업경영	필지수	임야면적(㎡)				등록정보 있음
		공부	실제경작	추경	폐경	
7. 가축·근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사육시설 소재지수	사육시설 면적(㎡)				등록정보 있음
		공부면적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 현황	직불금 정보 있음[ ], 없음 [ ]		정부보조·융자금 정보 있음[ ], 없음 [ ]		전환경 등 인증정보 있음[ ], 없음 [ ]	
	교육이수 정보 있음[ ], 없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있음[ ], 없음 [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 없음 [ ]	
<p>위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b>  <b>또는 산림청장</b>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0 10px;">직인</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의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등록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는 산림청 담당으로 등록 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8 항목은 등록정보에 있을 경우 표시되며, 상세정보는 위쪽의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의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없습니다.             </p>						

210mm×297mm[확장지 60g/㎡]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8. 26. >

<b>농업경영체 증명서</b>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미표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소재지)			
<p>「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직인</div>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20px;">※ 정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등록·변경등록된 농업경영체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p>			

## 부록 2 : 농림어업총조사규칙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0. 9. 1] [기획재정부령 제804호, 2020.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 (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4의3. "경영주"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 중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3.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4. 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

5. 경운기·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9. 농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임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성별·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 어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4.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 전문가 의견조사표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날 농업인과 농가 그리고 농업경영체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사)환경농업연구원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구조·경영 분야의 연구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업총조사 통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위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환경농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 및 교육·컨설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사)환경농업연구원 이경해 연구원 ☎ 02-3472-8830~1

○ 조사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 ~ 11월 30일(월)까지

#### 1. 일반사항

1. 본인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이하 해당란에 숫자(0)을 누르시면 됩니다.

( ) ① 연구직 ( ) ② 교수직 (0) ③ 기타

2.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40세 미만 ( ) ② 40~49세 ( ) ③ 50~59세 ( ) ④ 60세 이상

3. 연구 경력은 몇 년 되십니까?

( ) ① 10년 미만 ( ) ② 10~19년 ( ) ③ 20~29년 ( ) ④ 30년 이상

## II.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의거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정보란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을 말하며, 농업경영체가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자율등록하고 농관원이 상시관리합니다.

###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 인적 정보(경영주, 경영주 외) : 농업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경영주와의 관계, 공동경영주 여부, 농업시작 형태(전생애 종사, 타산업 전환), 농업종사 형태(전업, 겸업), 농업종사기간(시작년도),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기타)
- 농지 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가축·곤충 정보 : 사육시설의 지면·지목 및 면적, 경영 형태(자영·수탁)
- 생산 정보(농축산물표준코드 분류 준수)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재배면적,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
- 관내외 경작 : 관내, 관외 구분
- 후계자 관련 : 청년농업인,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단계별)

4.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 ) ① 잘 알고 있음 ( ) ② 대충 아는 수준임 ( ) ③ 잘 몰랐음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음 ( ) ② 없음 ⇒ 9번 문항으로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는 편입니까?

- ( ) ① 분석자료집 ( ) ② 연감 ( ) ③ 원자료 DB  
( ) ④ 기타 ( )

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연구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 ) ① 많은 도움이 됨 ( ) ② 일부 도움이 됨 (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어떤 사항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응답 후 10번 문항으로

- ( ) ① 인적 정보 ( ) ② 농지 정보 ( ) ③ 경종농업 정보  
( ) ④ 축산업 정보 ( ) ⑤ 기타 ( )

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필요성이 없어서 ( ) ② 절차가 복잡해서 ( ) ③ 특별한 이유 없음

1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홍보 강화 ( ) ② 정보 접근성 제고 ( ) ③ 정보 정확성 제고  
( ) ④ 타기관과 정보 연계 ⑤기타 ( )

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

### Ⅲ. 농업총조사에 관한 사항

농업총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규칙에 의거 우리나라 농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고, 행정리 단위의 경제활동, 생활 기반시설 등의 통계를 생산하여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표본조사의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며, FAO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여 국가 간의 자료 비교 및 교환,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 2020년 농업총조사 조사항목

- 인적 정보
  - 가구원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농림어업 종사기간, 농림어업 종사 형태, 농림어업 주종사 부문, 농림어업 외 종사기간, 주종사 분야
  - 경영주 특성 : 농림어업 종사 경력, 교육 정도, 혼인 상태
- 농업생산·경영 정보

- 농업생산 : 논 면적, 논벼 재배면적, 논벼 유기 비료, 논벼 농사방법, 모내기 준비기물관리, 논벼 성장기 물관리, 논벼 벃짚처리, 밭 면적, 식량작물, 시설(온실), 시설작물, 수경재배, 주요 과수 및 재배시설, 주요 과수 재배면적, 기타 과수, 시·군·구 작물, 가축, 축사 형태, 가축 분뇨처리, 목초지, 채소, 특용작물, 화초작물, 기타 작물,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 농업경영 : 경영 형태, 판매 금액, 판매처, 농업 고용, 농기계 보유, 영농 지역, 생산자조직 참여, 농업 관련사업 전업 및 겸업
- 생활 정보 : 정보화기기 보유, 정보화기기 활용, 교통수단 보유

12. 농업총조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아는 수준임  ③ 잘 몰랐음

13.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17번 문항으로

14.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는 편입니까?

- ① 간행물  ② 통계포털  ③ 원자료 DB  
 ④ 기타 ( )

15. 농업총조사 통계정보가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됨  ② 일부 도움이 됨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6.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어떤 사항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응답 후 18번 문항으로

- ① 인적 정보  ② 농지 정보  ③ 경종농업 정보  
 ④ 축산업 정보  ⑤ 기타 ( )

17. 농업총조사 통계정보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이 없어서  ② 절차가 복잡해서  ③ 특별한 이유 없음

18.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홍보 강화 ( ) ② 정보 접근성 제고 ( ) ③ 정보 정확성 제고  
( ) ④ 타기관과 정보 연계 ⑤기타 ( )

19.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

#### IV.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는 농업경영구조에 관한 방대한 정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이나 사용하는 용어에 상호 연계가 부족한 점이 지적됩니다.(부표 참조)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농업인경영체 수는 168만 개이고, 농가 수는 101만호로서 약 68만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농업종사자 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계청의 농업총조사가 각각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통계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공통 지표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20.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경영주)’이 신청하여 등록하며, 농업총조사는 ‘농가(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러한 조사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행대로 좋음 ( ) ② 개선이 필요함 ( ) ③ 잘 모르겠음

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업총조사 농가통계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공통 지표의 개발이 시급한 3분야를 선택하여 우선 순위(1,2,3)를 적어 주십시오.

- ( ) ① 농가(경영체) 형태 : 전업 또는 겸업  
( ) ② 농업경영주 구성 : 가구주(남, 여), 후계자, 공동경영주

- ( ) ③ 농업종사자 구성 : 농업종사자 수, 전업 또는 겸업  
 ( ) ④ 농업경영 규모 : 경작면적, 농산물판매액, 가축사육두수 등  
 ( ) ⑤ 농업경영 형태 : 논벼, 채소, 과수, 특작, 한우, 낙농, 한돈, 양계, 기타 등

22. 현행 농업경영체 정보에서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추가 희망 항목 : ( )  
 ② 삭제 희망 항목 : ( )

23. 현행 농업총조사 통계에서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① 추가 희망 항목 : ( )  
 ② 삭제 희망 항목 : ( )

24. 현행 규정에는 경지를 1000㎡ 이상 경작하면 농업인 또는 농가로 인정됩니다. 이 면적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행 유지 ( ) ② 늘려야 함 → ( )㎡ ( ) ③ 줄여야 함

25. 현행 규정에는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 또는 농가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행 유지 ( ) ② 늘려야 함 → ( )만원 ( ) ③ 줄여야 함

26. 농가의 경영주와 후계자가 각각 별개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적극 권장 ( ) ②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가능 ( ) ③ 반대

27.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적극 권장 ( ) ②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가능 ( ) ③ 반대

28.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자율등록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농업경영정보의 내용(양과 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 ( ) ② 미흡할 것으로 생각 ( ) ③ 모르겠음

29. 농업총조사는 농가에 대한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농업경영정보의 내용(양과 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 ( ) ② 미흡할 것으로 생각 ( ) ③ 모르겠음

30.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가 연구에 잘 활용되기 위하여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적어 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 참 고 문 헌

- 김경덕 외, 2012,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 2000·2005·2010 농업 총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외, 201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외, 20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김완배 외, 2002,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정호 외, 2002, 『1990·1995·2000년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5,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12, 『가족농 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15, 『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한호 외, 20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유형별 농업경영체 특성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 김한호 외, 20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 박민선, 2007, “한국농업의 구조변화 :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 제37권』, 농협경제연구소.
- 송미령 외, 2017,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송호만, 최은영, 2009, “농업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방안 - 농업경영체등록

- 부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 오내원 외,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 외,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은기수 외, 2011,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통계청(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 이계오 외, 2006, 『농림수산 분야 농업총조사 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통계청((재)대한통계협회 연구용역보고서).
- 이태호, 2020,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농업정책”(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 정호근 외, 2018, 『농업경영체 등록제 확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한석호 외, 201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DB 분석 및 활용 연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한석호 외, 2017, 『농업경영체 DB 활용 성과 및 시사점 연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방안 심포지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총조사의 관계 정립 및 협력 방안 연구

---

인 쇄 2020. 12. 28

발 행 2020. 12. 31

발행인 강 정 일

발행처 (사)환경농업연구원

06707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길 6

제증빌딩

02-3472-8830~1 <http://www.sari.re.kr>

인 쇄 유하인쇄 (02-533-7481)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사)환경농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